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아세안지역 FTA 원산지 규정의 특징과
엄격성 지수에 대한 연구

-HS6단위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중심으로-



2016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김혜지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아세안지역 FTA 원산지 규정의 특징과
엄격성 지수에 대한 연구

-HS6단위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조 찬 혁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김 혜 지

김혜지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8월



주 심 경영학박사 이 춘 수 (인)

위 원 경제학박사 김 철 수 (인)

위 원 경영학박사 조 찬 혁 (인)

< 국 문 초 록 >

아세안지역 FTA 원산지 규정의 특징과 엄격성 지수에 대한 연구

-HS-CODE6단위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중심으로-

원산지규정은 FTA에 있어 관세양허와 더불어 핵심이 되는 부분이지만 서로 다른 특혜협정들로 갈수록 복잡하게 얽히는 원산지 규정과 통관제도로 인해 국가 간 교역이 복잡해지고 있다.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역내 중간재 산업보호 효과, 더 나아가 연계 국간 교역확대와 역내외국가로부터의 투자 확대 등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반면, 원산지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결정될 경우 원산지규정 충족을 위한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오히려 생산, 교역 및 투자에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른 무역창출 감소 등 부정적인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FTA원산지 기준의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이 아세안(ASEAN)국가와 체결한 FTA원산지규정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각 FTA(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베트남)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규정된 15,410개 품목(HS-CODE 6단위)의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을 모두 조사하여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얼마나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에 따르면, 아세안 지역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 지수 평균은 한-싱가포르FTA 4.57, 한-아세안FTA 4.52, 한-베트남FTA 4.49 그리고 아세안 지역 전체 엄격성 지수 평균값은 4.53으로 나타났다.

품목군별 엄격성 지수는 관세율이 높고 경쟁력이 취약하여 민감성을 가지는 1차산품(6.65), 가공식품(5.32), 의류직물(5.34) 산업의 엄격성 지수는 높게 그리

고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있는 일반기계(3.78), 전기기계(3.69), 화학제품(4.03), 정밀기기(4.07) 품목군의 엄격성 지수는 낮게 나타났다.

FTA별 산업별 수출입 비중(금액기준)을 고려한 엄격성 지수의 가중평균 분석을 통해 한국의 對아세안 국가별 무역수지 증가 품목군을 확인하였고 전반적으로 엄격성 지수가 낮은 품목에서 무역수지가 증가하여 가중 평균한 엄격성 지수가 단순평균 엄격성 지수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별 수출 상위 100대 품목만을 고려한 엄격성 지수에서도 엄격성이 낮은 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화학제품 품목군에서 교역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세안 지역에서 기 발효된 FTA원산지 규정의 특징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엄격성 분석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FTA를 협의 중인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간FTA 원산지 규정 협상의 기본적인 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아세안 지역 내 기 발효된 FTA활용 및 다양한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 차

| | |
|------------------------------------|----|
| 표 목차 | iv |
| 그림 목차 | v |
| ABSTRACT | vi |
| | |
| 제1장 서론 | 1 |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
| 1.2.1 연구의 내용 | 3 |
| 1.2.2 연구의 방법 | 4 |
| 제3절 논문의 구성 | 5 |
| | |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문헌연구 | 6 |
| 제1절 원산지 규정 | 6 |
| 2.1.1 원산지 결정기준 | 6 |
| 2.1.2 아세안 지역FTA 원산지 결정 기준 특징 | 9 |
| 제2절 원산지 기준의 엄격성 | 12 |
| 2.2.1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2 |
| 2.2.2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에 대한 선행연구 | 13 |
| 제3절 아세안 지역FTA 선행연구 | 16 |
| 2.3.1 한-싱가포르FTA 선행연구 | 16 |

| | |
|--|-----------|
| 2.3.2 한-아세안FTA 선행연구 | 17 |
| 2.3.3 한-베트남FTA 선행연구 | 19 |
| 제3장 아세안(ASEAN)지역 FTA체결 현황 | 21 |
| 제1절 한-싱가포르FTA | 21 |
| 3.1.1 추진배경 및 체결의의 | 21 |
| 3.1.2 관세양허 안 | 22 |
| 제2절 한-아세안FTA | 23 |
| 3.2.1 추진배경 및 체결의의 | 23 |
| 3.2.2 관세양허 안 | 25 |
| 제3절 한-베트남FTA | 27 |
| 3.3.1 추진배경 및 체결의의 | 27 |
| 3.3.2 관세양허 안 | 28 |
| 제4장 자료분석 | 29 |
| 제1절 아세안 지역 FTA PSR유형 및 엄격성 지수 | 29 |
| 4.1.1 PSR 유형분석 | 29 |
| 4.1.2 Estevadeordal의 엄격성 지수 | 31 |
| 제2절 아세안 지역 FTA PSR 엄격성 지수 분석 | 35 |
| 4.2.1 FTA별 엄격성 지수 평균 비교 | 35 |
| 4.2.2 품목군별 엄격성 지수 평균 비교 | 36 |
| 4.2.3 21부 엄격성 지수 평균 비교 | 38 |
| 제3절 FTA별 PSR 엄격성 지수 평균 분석 | 41 |

| | |
|------------------------------------|----|
| 4.3.1 한-싱가포르FTA | 41 |
| 4.3.2 한-아세안FTA | 44 |
| 4.3.3 한-베트남FTA | 48 |
| 제4절 가중평균 지수 | 56 |
| 4.4.1 엄격성 지수의 가중평균 | 56 |
| 4.4.2 한-싱가포르FTA 엄격성 지수의 가중평균 | 58 |
| 4.4.3 한-아세안FTA 엄격성 지수의 가중평균 | 60 |
| 4.4.4 한-베트남FTA 엄격성 지수의 가중평균 | 61 |
| 제5절 FTA별 수출100대 품목 엄격성 지수 | 64 |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68 |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 68 |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 71 |
| * 참고문헌 | 72 |

표 목 차

| | |
|--|----|
| <표 2-1> 원산지결정기준 | 7 |
| <표 3-1> 한-싱가포르 수출입동향 | 21 |
| <표 3-2> 한-아세안 수출입동향 | 24 |
| <표 3-3> 아세안 국가별 품목별 수출입 동향 | 24 |
| <표 3-4> 민감품목군(SL+HSL)에 대한 관세 감축 상한선 | 25 |
| <표 3-5> 한국과 아세안(ASEAN)국별 민감품목군 양허현황 | 26 |
| <표 3-6> 한-베트남 수출입동향 | 27 |
| <표 4-1> 아세안 지역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주요 유형 | 30 |
| <표 4-2> Estevadeordal의 엄격성 지수 개요 | 31 |
| <표 4-3> 아세안 지역 FTA PSR유형 및 엄격성 지수 | 32 |
| <표 4-4> 아세안 지역 FTA 엄격성 지수 평균 | 35 |
| <표 4-5> 엄격성 지수 평균 사후집단 비교 | 36 |
| <표 4-6> 품목군별 엄격성 지수 평균 | 36 |
| <표 4-7> 품목군별 엄격성 지수 평균 사후집단 비교 | 37 |
| <표 4-8> 21부 엄격성 지수 평균 | 38 |
| <표 4-9> 21부 엄격성 지수 평균 사후집단 비교 | 39 |
| <표 4-10> 한-싱가포르FTA 품목군별 엄격성 지수 평균 | 41 |
| <표 4-11> 한-싱가포르FTA 품목군별 엄격성지수 평균 사후집단 비교 .. | 42 |
| <표 4-12> 한-싱가포르FTA 21부 엄격성 지수 평균 | 43 |
| <표 4-13> 한-싱가포르FTA 21부 엄격성 지수 평균 사후집단 비교 | 44 |
| <표 4-14> 한-아세안FTA 품목군별 엄격성 지수 평균 | 45 |
| <표 4-15> 한-아세안FTA 품목군별 엄격성 지수 평균 사후집단 비교 | 45 |
| <표 4-16> 한-아세안FTA 21부 엄격성 지수 평균 | 47 |
| <표 4-17> 한-아세안FTA 21부 엄격성 지수 평균 사후집단 비교 | 48 |
| <표 4-18> 한-베트남FTA 품목군별 엄격성 지수 평균 | 49 |

| | |
|--|----|
| <표 4-19> 한-베트남FTA 품목군별 사후집단 비교 | 49 |
| <표 4-20> 한-베트남FTA 21부 엄격성 지수 평균 | 51 |
| <표 4-21> 한-베트남FTA 21부 사후집단 비교 | 52 |
| <표 4-22> FTA별 품목군별 엄격성 지수 비교 | 53 |
| <표 4-23> FTA별 21부 엄격성 지수 비교 | 54 |
| <표 4-24> 가중평균한 엄격성 지수 | 57 |
| <표 4-25> 한-싱가포르FTA 수출비중 엄격성 지수의 가중평균 | 58 |
| <표 4-26> 한-싱가포르FTA 수입비중 엄격성 지수의 가중평균 | 59 |
| <표 4-27> 한-아세안FTA 수출비중 엄격성 지수의 가중평균 | 60 |
| <표 4-28> 한-아세안FTA 수입비중 엄격성 지수의 가중평균 | 61 |
| <표 4-29> 한-베트남FTA 수출비중 엄격성 지수의 가중평균 | 62 |
| <표 4-30> 한-베트남FTA 수입비중 엄격성 지수의 가중평균 | 63 |
| <표 4-31> FTA별 수출 100대 품목 엄격성 지수 | 64 |
| <표 4-32> 한-싱가포르FTA 수출 100대 품목 엄격성 지수 | 65 |
| <표 4-33> 한-아세안FTA 수출 100대 품목 엄격성 지수 | 66 |
| <표 4-34> 한-베트남FTA 수출 100대 품목 엄격성 지수 | 67 |

그림 목 차

| | |
|--------------------------------|----|
| <그림 1-1>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조 | 6 |
| <그림 3-1>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입 비중 | 23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Restrictiveness Index
of Rules of Origin in FTA ASEAN Regions
- Focusing on HS-CODE 6 unit Product Specific Rules -**

Kim, Hye Ji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 Logistics,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Rules of origin is the key part in FTAs along with tariff concession, but rules of origin and clearance systems that are interwoven complicatedly due to different preferential agreements have made international trade more complex.

Too strict rules of origin would cause increases in corporate production costs to satisfy the rules of origin, resulting in inefficiency in production, trade and investment and other negative effects including a decrease in trade creation. Therefore, in order to discuss the effect of FTA rules of origin, it is necessary to analyze restrictiveness of specific rules of origin first.

The study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rules of origin of FTAs that South Korea concluded with ASEAN nations and the standard types for deciding the country of origin for 15,410 items (HS-CODE 6 unit) defined with product specific rules from each FTA (South Korea-Singapore, South Korea-ASEAN, and South Korea-Vietnam). Additionally, by analyzing the strictness of product-specific rules of FTAs in ASEAN regions, basic directions of bilateral FTA negotiations on

Rules of Origin with ASEAN countries including Indonesia and Malaysia can be predicted. Furthermore, the study aims to draw implications for existing FTAs in ASEAN reg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study, the average restrictiveness indices of FTA product specific rules in ASEAN regions are as follows: South Korea-Singapore FTA (4.57), South Korea-ASEAN FTA (4.52), and South Korea-Vietnam FTA (4.49). Meanwhile, the average restrictiveness index of the ASEAN regions as a whole was 4.53. As for restrictiveness index by industry, industries with high custom tariffs, low competitiveness and high vulnerability such as commodities products (6.65), processed food (5.32), and clothes and fabrics (5.34) showed high restrictiveness indices, while industries where South Korea has competitiveness in exports including general machines (3.78), electrical machines (3.69), chemical products (4.03), and precision instruments (4.07) had low restrictiveness indices.

Through analysis of the weighted average of the restrictiveness index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exports and imports (based on costs) by FTA and industry sector, industries where South Korean trade balances against ASEAN nations were increased were identified. Overall, items with low restrictiveness indices showed an increase in trade balance, which led to a lower weighted average of restrictiveness indices compared to a simple average of restrictiveness indices. As for restrictiveness indices only for the top 100 exports by FTA, trade was conducted mainly in industry sectors with low restrictiveness including general machines, electrical machines, precision instruments and chemical produc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 경제는 거대한 경제 블록을 만들어가는 형태로 지역별 경제통합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 경제 강대국들이 아시아 지역 경제패권을 선점하기 위해 미국 주도의 TPP(Trans-Pacific Partnership), 중국 주도의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등 다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입의사를 밝히고 협상 진행 중에 있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 통상질서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다자간 무역협정체결 현상이 집중되고 있지만 TPP와 RCEP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에 대해 단순히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은 국제정치적 해석에 불가하다는 것이다.

TPP와 RCEP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은 각국이 그 동안 맺은 수많은 양자 특혜무역협정들로 인해 빚어지는 FTA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메가(MEGA)FTA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특혜협정들로 인해 갈수록 복잡하게 얽히는 원산지 규정, 통관제도 등은 교역을 복잡하게 만들어 거래 비용을 올린다.

FTA협정문 상에서 특정 상품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복잡하고 엄격한 원산지규정으로 수출 품목이 원산지규정을 허용하지 못하는 경우, 또 원산지 증명을 위한 절차와 비용이 특혜관세를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포기하게 된다.

원산지규정은 FTA에 있어 관세양허와 더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기업의 투자 및 생산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원산지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할 경우 무역전환효과(관세철폐로 생산비가 낮은 역외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이 생산비가 더 높은 역내국에서 수입)로 인해 생산, 교역 및 투자에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도 초래하게 된다.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하에서 상품의 생산이 2개국 이상 여러 단계로 분화된다. 각각의 단계가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 상관없이 비용경쟁력이 있는 국가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원산지규정은 우회수입을 방지하면서 기업의 글로벌 부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자국과 상대국의 산업경쟁력 수준을 판단하여 합리적인 원산지규정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시장을 대신할 ‘포스트 차이나’(Post China) 시장이며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다자간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과 엄격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은 아세안의 성장세, FTA발효, 한류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05년~2015년까지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아세안 지역에서의 FTA체결은 낮은 시장개방과 원산지규정 충족 비용 고려 시 기업의 실질적 관세 특혜가 크지 않아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인교, 2010)

이러한 연구 결과의 원인으로 아세안 지역 FTA 원산지규정이 엄격함으로 인한 것인지 원산지 규정의 특징과 엄격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엄격성지수를 분석하여 보고 한국의 對아세안 지역 산업별 수출입 비중을 고려한 엄격성지수의 가중평균을 통해 주요 교역 품목의 엄격성 정도가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무역수지가 흑자인 품목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설정하고, 적자일 경우 해당 품목의 원산지 규정을 상대적으로 엄격히 규정하는데 가중평균한 엄격성 지수를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의 對 아세안 지역 무역수지 현황과 엄격성 지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아세안 지역에서 기 발효된 FTA 원산지 규정의 특징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엄격성 분석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FTA를 협의 중인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간 FTA 원산지 규정 협상의 기본적인 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아세안 지역 내 기 발효된 FTA 활용 및 다양한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1 연구의 내용

본 논문에서는 FTA 특혜관세를 부여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인 원산지 규정에 초점을 두고 한국이 아세안(ASEAN) 국가와 체결한 FTA 원산지 규정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각 FTA(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베트남)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규정된 15,410개 품목(HS-CODE 6단위)의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을 모두 조사하여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얼마나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 각 FTA별로 산업별 수출입 비중을 고려한 가중평균한 엄격성 지수를 통해 한국의 對 아세안 지역 무역수지 현황과 엄격성 지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싱가포르, 아세안, 베트남 수출 100대 품목을 선정하여, 동 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 산업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1.2.2 연구의 방법

아세안 지역에서 체결된 FTA원산지 규정의 특징과 엄격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 규정은 문헌자료 및 각 FTA협정문을 통해 분석한다. 아세안 지역 FTA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HS 협약(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에 근거하여 5년마다(2002년, 2007년, 2012년)개정, 수정되는 HS-CODE를 감안하여 한-싱가포르FTA, 한-아세안FTA, 한-베트남FTA HS-CODE 6단위기준 총 15,410개(한-싱가포르(5,133), 한-아세안(5,072), 한-베트남(5,205))품목에 대해 각 협정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의 유형을 분석한다.

15,410개 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을 Estevadeordal(2000)의 엄격성 지수 요건에 맞추어 카테고리별로 최소 1에서 최대 7점까지 지수를 부여하여 엄격성 지수 평균을 FTA별, 품목군별, 21부 기준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다. 분석 방법에는 SPSS 버전18을 사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다.

또 체결 FTA별 수출 및 수입 비중을 산업별로 고려하여 전체 수출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해당 산업의 원산지 규정 엄격성 지수를 곱하여 모든 산업을 더해 엄격성 지수의 가중평균을 분석한다. 한국의 對 아세안 지역 산업별 수출입 실적(금액기준)은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제3절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연구방법을 기술하였다.

제 2장은 FTA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원산지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아세안 지역FTA 원산지 규정의 특징을 확인해보았다. 또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이에 대한 선행 연구 및 분석대상이 되는 아세안 지역FTA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 3장은 아세안 지역FTA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분석에 앞서 우리나라와 체결된 한-싱가포르FTA, 한-아세안FTA, 한-베트남FTA의 체결 의의 및 배경을 문헌연구를 통해 재정리 하였다.

제 4장은 각FTA별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규정된 15,410개 품목(HS-CODE 6단위)의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 및 엄격성 지수를 분석하였다. 또 체결 FTA별 산업별 수출입 비중을 고려한 가중평균 한 엄격성 지수를 통해 한국의 對 아세안 지역 무역수지 현황과 엄격성 지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싱가포르, 아세안, 베트남 수출 100대 품목을 선정하여, 동 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 산업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5장은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고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문헌연구

제1절 원산지 규정

2.1.1 원산지 결정기준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하에 상품의 생산은 여러 단계로 분화되고, 각각의 단계가 어느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 상관없이 비용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무역의 대상이 되는 상품들이 실제 어느 국가에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창출하면서 생산되었는지 또 해당 상품의 원산지가 체결된 FTA원산지기준에 적합한가를 결정해야 한다.

FTA 원산지기준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으로 규정되는 일반기준(General Rules)과 해당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통상 '별표'로 규정되는 품목별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으로 구분된다.

<그림 1-1> 원산지결정기준의 구조



일반기준은 원산지규정의 기반을 이루는 공통 기본원칙과 특례규정으로 구성된다. 일반기준의 특례규정으로는 누적기준, 최소허용기준, 중간재, 대체가능품, 간접재료 등이 있고 이 같은 특례규정은 품목별 기준의 엄격성이나 원산지결정 과정의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표 2-1> 원산지결정기준

| 일반기준(총칙) | | 품목별기준(각칙) | |
|---|---|--|--|
| 기본원칙 | 분야별특례 | 공통기준 | 개별기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생산품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 불완전생산품 (실질적변형기준) - 원산지재료생산품 - 직접운송 원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적기준 - 최소기준 - 중간재 - 대체가능물품 - 간접재료 - 부속품·예비품 - 포장·용기 - 세트물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주 - 부·류·호의 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번변경기준 - 가공공정기준 - 부가가치기준 - 조합기준 - 선택기준 |

출처: 한국의 기 체결 FTA협정상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연구. 박현희(2012)

반면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s)은 개별품목의 원산지 결정에 적용된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은 각 산업별 특성이나 체결국간의 교역구조를 고려하여 품목별로 원산지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된 원재료의 품목분류와 역내 부가가치산출의 기초가 되는 조정가격이나 재료 가격의 관세평가방법, 직간접재료비의 배분이나 제조원가 등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PSR은 일반적으로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되어 규정된다. PSR의 공통기준은 특정 품목군에 국한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개별기준은 FTA 협정문에 모든 품목을 HS-CODE별로 규정한다.

PSR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변형기준으로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등이 규정된다.

실질변형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세번변경기준은 역외로부터 수입된 원료 및 부품의 HS-CODE와 역내에서 생산된 최종재의 HS-CODE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역외 원료와 완성품의 HS-CODE가 다르다면 역외 원료에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졌음을 추정하고 원산지로 인정한다.

이것은 역외 부품 및 원재료와 역내 생산품의 HS-CODE변화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에게도 수입국 관세당국에도 간단명료하여 중요한 FTA원산지 결정기준이 된다.

부가가치기준은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부품과 중간재의 비중 및 부가가치를 추적함으로써 상품들이 실제로 어느 국가에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창출하면서 생산되고 그 결과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해 주는 기준이다.

가공공정기준은 역외 재료를 이용한 역내 생산 공정이 더 높은 수준의 가공이라면 FTA역내 원산지자격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가공공정기준은 빠른 기술진보와 더불어 신속적으로 조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고 가공공정기준은 오히려 기술진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으므로 이 기준은 일부 상품(섬유 등)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국가 간 무역에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 GVCs)현상이 확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생산기준의 유용성은 점점 하락되고 있고, 실질적인 변형기준이 결국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변형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HS품목분류체계상 가공단계별로 배열되어 있지 않은 물품은 적용이 곤란한 점, 부가가치기준은 자의적인 원가조작과 국제적 회계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실제 생산 활동이 없는 경우도 원산지로 인정되어 역외산 물품의 우회수입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 국제시장에서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라 안정적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 주요공정기준은 새로운 상품에 대하여는 생산 공정을 반영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반영하여 한 가지만으로 규정하는 단일기준과, 두 가지 이상을 정해 두고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기준,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하는 결합기준의 세 가지 형태로 유형화하여 분류하고 있다.

2.1.2 아세안 지역FTA 원산지 결정 기준 특징

한-싱가포르 FTA의 원산지 규정은 싱가포르가 채수출 비중이 높은 중계무역국가임을 감안하여 비교적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였다. 한-싱가포르FTA협정문 제 4 장 제4.1조에서 완전생산기준으로 ① 양국에서 수확, 채취한 식물과 광물, ② 양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동물, ③ 양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가지고 처음부터 양국에서 가공한 물품 등의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실질적 변형기준으로는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을 보완적으로 적용하여 세번변경기준과 조합하여 혹은 단독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부가가치기준이 사용되는 경우, 공제법(build-down method) 계산에 따라, 전반적으로 45~55% 이상의 역내가치 포함비율(regional value content)을 요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원산지기준의 보충원칙으로 미소기준의 경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관세가격의 10%(섬유제품의 경우 8%)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단, 농, 수산물의 경우 신선 농, 수산물에 대해서는 미소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가공 농, 수산물은 HS-CODE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추가로 만족해야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누적규정에 따라,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가 국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국내산으로 간주된다.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최소가공 또는 불인정공정을 다양하게 예시하였는

데, 건조, 냉동 등 운송 및 저장기간 동안 좋은 상태로 상품을 보존시키기 위한 작업, 상표 부착, 분해, 포장의 변경, 단순 혼합, 단순 조립, 시험 또는 측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아세안FTA의 원산지 규정은, 역내부가가치 40% 또는 HS-CODE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or RVC40%)을 충족할 것을 공통기준으로 규정하고, 그 예외로서 447개 품목에 대해서는 협정문 부속서 3의 부록2 품목별 원산지결정 기준(PSR)에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기준은 직접법 또는 공제법 중 하나의 방법을 채택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투명성, 일관성 및 확실성을 증진하기 위해, 각 당사국은 하나의 방법을 고수한다.

각 당사국은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기 적어도 6개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 통보한다. 원산지를 결정하는 일반원칙 이외에 누적기준, 미소기준, 원산지불인정공정기준 및 직접운송원칙 등 다양한 보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직접운송원칙은 특혜관세혜택 충족 요건으로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다만 비당사국을 경유하더라도 제3국 경유가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요건에만 관련한 고려에 의해 정당화 될 경우,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한 경우,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원산지를 인정한다.

또 한-아세안FTA에서는 상업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계산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물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반드시 제3국 발행 송장임을 명시하고 3자 정보(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국적 등)를 기재하여야 한다.

한-베트남FTA 원산지 규정은 한-아세안FTA 원산지규정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기준에 직접법 또는 공제법 중 하나의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원칙 이외에 누적기준, 미소기준, 원산지불인정공정기준 및 직접운송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미소기준의 경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관세가격 또는 중량 10%(섬유제품의 경우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은 협정문 부속서 3-가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절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2.2.1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Krishna and Krueger(1995)는 NAFTA원산지규정이 수입국에 미치는 영향과 FTA체결에 따른 교역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수입국과 수출국의 무역거래에서 FTA체결 이후 수출국 기업은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 생산, 수출하는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클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포기하고 MF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최혜국 대우)관세 적용을 받아 수출할 것으로 보았다.

원산지규정은 기본적으로 생산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는데 이는 기업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중간재 조달이나 생산방식을 변경해야 할 때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생산비용은 원산지규정의 ‘엄격성(restrictiveness)’에 따라 증가한다고 보았다.

Antoni Estevadeordal (2003)연구에 의하면, 무역과 투자왜곡 측면에서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역내 최종재 생산자들로 하여금 FTA역내에서 비싼 중간 투입재의 조달을 유도하여 생산비용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생산비용의 상승은 궁극적으로 최종재 생산을 감소시키고, 이는 역내 중간 투입재 수요를 감소시킴으로써 중간 투입재 및 최종재의 역내 무역이 다 같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다. 그로 인해 FTA의 잠재적 기대이익이 약화되게 되는 것이다.

반면, FTA 협상 시 취약산업의 시장개방에 대한 반발이 심한 경우 원산지규정을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시장개방을 지연시키는 효과와 해당

산업의 반발을 약화시키는 긍정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역내 중간재 산업보호 효과, 더 나아가 연계 국간 교역확대와 역내외국가로부터의 투자 확대 등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결정될 경우는 원산지규정 충족을 위한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오히려 생산, 교역 및 투자에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른 무역창출 감소 등 부정적인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FTA원산지규정의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2.2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에 대한 선행연구

원산지규정 자체는 단순하면서도 비즈니스 친화적인(business friendly) 동시에, 상대국에 따라 산업계의 요청, 정부의 정책목표와 관련한 품목, 산업이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양국의 민감한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정란(2006)은 FTA에서 원산지규정을 엄격하게 설정할 경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가급적 완화된 요건으로 구성된 원산지기준이 바람직하다고 하였고, 국내산업의 구조, 생산방식, 원재료 조달방법 등을 고려하여 역내 투자와 교역을 최대화 시킬 수 있도록 원산지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 체결된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엄격성을 Estevadeordal방법과 호주 PC(Productivity Commission)방법을 이용하여 분석, 한-싱가포르FTA 원산지기준이 더 엄격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그러나 엄격성을 분석하는 방법 및 산업적 특성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 한계점으로 남아 있다.

또 기존의 FTA 연구가 경제효과 추정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또 다른 비관세장벽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엄격성 지수를 활용하여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FTA원산지 기준을 비교 검토 후, 품목별 관세철폐 영향을 원산지기준과 연계시켜 분석하고 관세양허는 관세율과 더불어 자국과 상대국의 산업경쟁력 수준을 판단하여 원산지기준을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정관(2010)

이용근, 안창달(2011)은 한국 FTA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엄격성지수를 도출하고, 이러한 엄격성지수를 바탕으로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엄격성지수가 교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엄격성지수가 높다는 것은 원산지기준이 매우 복잡하고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고 결국 교역량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김영춘, 성남길, 김정숙(2012)은 FTA특혜관세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복잡성과 엄격성으로 보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FTA의 특혜세율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FTA 활용율을 낮추는 원인을 규명하고 무역환경의 변화가 관세행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김세영, 조국형(2012)은 FTA 기체결국가간의 교역구조를 분석한 후 5,498개 품목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하여 실증분석 하고, 특혜 원산지결정기준 및 엄격성에 대한 상관관계, 즉 "개방에 대한 민감성이 높을수록 엄격한 원산지기준이 도입 된다"는 가정을 실증적 분석을 통해 검증한 후 향후 진행되는 FTA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문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박명섭, 조미진, 이병문(2014)은 FTA원산지기준의 일관성 결여는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FTA의 경제적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일관성 지수(CI)를 적용하여 우리나라가 기 체결한 주요 FTA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상대적 일관성 정도와, 품목별 그리고 산업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일관성

에 차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한국형' 원산지기준의 기초를 다지고자 하였다.

정재완(2015)은 PSR(Product Specific Rules)을 포함한 원산지기준이 관세양허 이상으로 FTA에서 갖는 의미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PSR 기준 설정에 있어 어떠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미 기준 된 PSR이 적정한지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문제를 제기, PSR 3단계 결정모델을 제시하여 우리나라가 기 체결한

FTA PSR이 적정한지를 우리나라 대표 교역품목 3개군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기준요인 선정이 타당한 절차를 거쳤는가에 대한 한계점이 지적된다.



제3절 아세안 지역FTA 선행연구

2.3.1 한-싱가포르FTA

조정란(2006)은 가급적 완화된 요건으로 구성된 원산지기준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기 체결된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엄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칠레 FTA보다 싱가포르와의 FTA원산지기준이 더 엄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싱가포르는 주류를 비롯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무관세를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의 FTA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작을 것이며 싱가포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원산지기준이 채택된 것으로 보았다.

정인교, 조정란(2002)은 싱가포르와 양자간 FTA 협상을 먼저 체결한 일본이 싱가포르 시장에 개방한 관세양허 안을 고찰하여 보고, 우리나라의 對싱가포르 관세양허 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GATT 제 24조에 명시된 지역무역협정이 최혜국대우 예외 조건의 일환으로 상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적절한'시점 내에 철폐해야 한다는 점과, 싱가포르에 대한 관세양허 안은 실행관세율 수준, 對싱가포르 및 對세계 수입액, 무역특화지수(TSI), 동태적 경쟁력지수(RCA)등을 기초로 하여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정인교, 조정란(2002) 일-싱가포르 FTA 관세양허구조 분석 및 한-싱가포르 FTA에 대한 시사점으로 한-싱가포르 FTA의 원산지 기준은 싱가포르가 재수출 비중이 높은 중계무역국가임을 감안하여 비교적 엄격하면서도 합리적인 원산지 기준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3.2 한-아세안FTA

남풍우, 최준호(2007)는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의 혜택을 정확하게 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과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고 복잡한 원산지결정기준 및 작성요령을 숙지하지 못할 경우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행한다고 지적하며 FTA 및 원산지 전문인력 양성을 강조하였다.

정인교(2010)는 이행중인 FTA 무역피해 대책 개선에 대한 연구에서 한-아세안 FTA 무역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로 한-아세안 FTA 시장개방 내용이 아세안 역외공동관세(CEPT)보다 낮은 시장개방을 하고 있어 원산지기준 충족 비용을 고려하면 기업들의 실질적이 관세 상의 특혜가 크지 않아 우리기업들이 동 FTA를 사용하지 않고, 아세안의 對한국 수출도 많지 않아 기업들의 무역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개방수준은 낮고 원산지기준은 엄격한 편이어서 아세안 국가 간 원산지결정기준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아세안(ASEAN)은 국가별 상이한 발전구조로 인해 FTA 관세철폐 이행현황이 느리고 다소 보호주의적인 성격을 띠는 만큼 한-아세안 FTA 발효 후의 성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조미진, 장용준 및 김한성(2012)은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양자 간 교역 확대에 주목하고, 한-아세안 FTA 성과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對아세안 전체 및 개별회원국에 대한 교역 품목의 다변화, 수출의 내. 외연적 성장, 중소기업/대기업 간 수출특징 등을 토대로 FTA의 성과를 재평가하고, 기업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한-아세안 FTA의 효과를 기업별 특징을 고려하여 연구한 결과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입 품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수출입 품목의 지속적 확대는 아세안(ASEAN) 회원국 가운데 교역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후발개도국(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 신규 품목에 대한 무역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교역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를 중심으로 무역향상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했다.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된 FTA 효과로 국내기업의 수출 증대는 총 수출액(내연적 성장)과 수출품목수(외연적 성장)의 모든 측면에서 FTA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연정, 배정환(2012)은 우리 수출기업들의 한-아세안 FTA 활용 성공사례를 조사하여 이를 분석한 후 활용 전략들을 FTA의 對기업 영향분석방법의 7개 분야로 나누어 분류해 이를 필요역량과 이행수준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평가해 성공전략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업들은 수출품의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현황과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하여 FTA적용여부와 실익을 따져보고 가장 큰 폭의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결정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세번변경, 부가가치기준 및 미소기준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한, 윤기창(2014)은 한-아세안FTA효용성 연구에서 아세안이 동아시아 메가FTA 지역으로 정착하는데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아세안과의 FTA는 한국에 큰 의미를 가지며 한국이 아세안과의 FTA 체결을 통해 지역통합의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FTA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시한다. 기업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으로 한국형 통일 원산지기준에 대한 모델이 제시되어 절차와 형식에서 간소화가 이루어져야하고, 정책을 통한 FTA 활성화 방안으로는 아세안 개별 가입 국들과의 관세인하 및 철폐의 조속한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3.3 한-베트남FTA

조미진, 김정곤(2012)은 베트남의 기 체결 FTA 상품양허협정문 분석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베트남 시장접근 개선 정도를 수평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FTA를 통해 베트남 시장접근성을 가장 많이 개선한 국가는 일본, 개선 정도가 가장 낮은 국가는 한국으로 나타났다. FTA를 통한 시장접근성 개선 정도는 여타 국가에 대한 해당 국가의 양허 수준, 협상 시점, 기준연도 관세율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좌우되며, 이 같은 점에 대한 고려 없이 FTA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정인교(2012)는 한-베트남 FTA 체결 시 예상되는 이슈와 파급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기존의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전제로 한 FTA체결이 없으면 아세안 시장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며 한-베트남 FTA추진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기 체결된 한-아세안 FTA에서의 베트남 잔존관세율 철폐와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경우 한-베트남 FTA 경제효과를 GDP, 후생, 교역 및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정하였다. 또 베트남과의 FTA협상 타결이 없이는 향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의 양자간 FTA추진도 힘들 것으로 주장했다.

이처럼 아세안 지역에서 체결된 양.다자간FTA 원산지규정에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체결 국가간의 산업구조, 생산방식, 원재료 조달방법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산업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중국, 일본, 미국, EU와 더불어 거대 경제권인 아세안과의 효율적인 FTA체결 및 활용에 대해 기업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아세안 지역에서 체결된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을 세번변경 중심으로 단일기준, 선택기준, 결합기준으로 구분하여 FTA별

분포를 비교토록 하였다. 또 아세안 지역 FTA의 품목 및 산업별 원산지결정기준 유형을 엄격성 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산업별 수출입 비중을 고려한 가중평균 한 엄격성 지수를 통해 한국의 대 아세안 지역 무역수지 현황과 엄격성 지수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아세안 지역에서 체결한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재확인하고 중국 대안의 제조업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시장과의 무역거래에 FTA관세특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 및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아세안 지역 내 기 발효된 FTA활용 및 다양한 연구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도 의미가 있을 것을 본다.



제3장 아세안(ASEAN)지역 FTA체결 현황

제1절 한-싱가포르FTA

3.1.1 추진배경 및 체결의의

한-싱가포르FTA는 한-칠레 FTA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맺은 FTA이다. 한-싱가포르FTA는 FTA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 보다는 동남아 진출 교두보, 아세안과의 관계강화 등의 전략적 의미와 싱가포르로부터의 투자 유입 가능성 등에 긍정적 요인을 높게 평가하여 체결된 협정이다.

싱가포르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우리나라의 13~14위 교역 대상국이었으나 1998년 이후 우리의 10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 2015년 기준 대부분의 동남아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표 3-1> 한-싱가포르 수출입동향

(단위 : 백만불, 천톤, %)

| | | '05년 | '12년 | '13년 | '14년 | | '15년 4월누계 | |
|------|----|-------|--------|--------|-------------|---------------|-----------|--------|
| | | | | | 전년대비 증감률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 |
| 수출 | 금액 | 7,407 | 22,888 | 22,289 | 23,750 | 6.6 | 5,315 | -45.2 |
| | 중량 | 3,622 | 12,310 | 12,885 | 14,961 | 16.1 | 4,527 | -19.3 |
| 수입 | 금액 | 5,318 | 9,676 | 10,369 | 11,303 | 9.0 | 2,921 | -31.8 |
| | 중량 | 770 | 2,967 | 3,692 | 4,488 | 21.5 | 1,578 | -8.6 |
| 무역수지 | | 2,089 | 13,212 | 11,920 | 12,447 | 흑자폭 확대 | 2,394 | 흑자폭 축소 |

출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TREND ANALYSIS (2015)

아시아지역 최초 FTA 추진 대상지역으로 설정한 이유로는 싱가포르가 도시형 개방경제체제이자 대외무역의존형 경제구조로 농업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적고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타당성, 정치, 외교적 합의,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도움이 되는 국가기준을 적용하여 체결되었다.

한-싱가포르FTA의 단기적 영향을 고려하면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관세인하 폭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투자유입의 효과가 고려되는 장기적 분석에서는 가급적 관세인하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제시되어, 단기와 장기간 효과 사이에 상쇄(trade-off)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3.1.2 관세양허 안

싱가포르는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한국의 모든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은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대해 즉시 철폐, 5년, 10년의 이행기간에 걸쳐 일정표에 따라 균등하게 관세를 철폐하고 일부 민감품목 (농.수산물 및 일부 공산품)에 대해서는 자유화일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였다.

싱가포르는 현재 실행관세(MFN)를 부과하고 있는 주류 등 6개 품목을 제외, 모든 품목에 대하여 발효 즉시 관세철폐하고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91.6%에 대한 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품목을 제외하여 다소 보수적으로 양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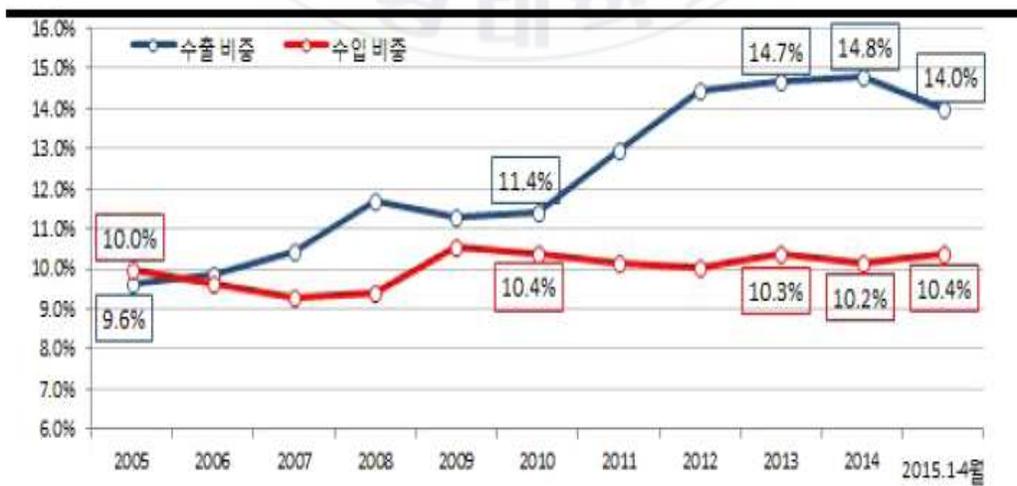
제2절 한-아세안FTA

3.2.1 추진배경 및 체결의의

아세안(ASEAN)은 약 6억명의 인구와 세계7대 경제권으로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가 거대 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이다. 아세안 지역은 최근 견고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꾸준하게 경제 성장을 해 왔다. 또 중국을 잇는 제조업 생산지기로 부상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도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수입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對아세안 교역은 아세안의 성장세, FTA발효, 한류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아세안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5년 9.6%에서 '14년 14.8% '15년(4월 누계) 14.0%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05년 10.0%에서 최근까지 비슷한 수준 유지하고 있다.

<그림 3-1> 한국의 對아세안 수출입 비중



출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기준년도 2005~2015년

아세안은 글로벌 제조업 생산기지이며 소비 잠재력이 높아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의 관심 및 교역 증가가 뚜렷하다.

<표 3-2> 한-아세안 수출입동향 [단위: 백만불, 천톤 %]

| | | '05년 | '12년 | '13년 | '14년 | | '15년 4월누계 | |
|------|----|--------|--------|--------|--------|-------------|-----------|---------------|
| | | | | | | 전년대비 증감률 |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 수출 | 금액 | 27,432 | 79,145 | 81,997 | 84,577 | 3.1 | 25,126 | -18.3 |
| | 중량 | 16,360 | 40,305 | 39,845 | 42,576 | 6.9 | 12,935 | -15.4 |
| 수입 | 금액 | 26,064 | 51,977 | 53,339 | 53,418 | 0.1 | 15,481 | -16.3 |
| | 중량 | 47,244 | 77,384 | 76,721 | 74,634 | -2.7 | 24,877 | -4.1 |
| 무역수지 | | 1,368 | 27,168 | 28,658 | 31,160 | 흑자폭 확대 | 9,645 | 흑자폭 축소 |

출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TREND ANALYSIS (2015)

<표 3-3> 아세안 국가별 품목별 수출입 동향 [2014년 기준 전년대비 증감]

(단위 : 억불, %)

| | | 싱가포르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태국 | 브루나이 | 미얀마 | 캄보디아 | 라오스 |
|----|-------|------------|-------------------|-----------|-----------|------------|------------|------------|-------------------|-----------|-----------|
| 수출 | 금액 | 237 | 224 | 114 | 76 | 100 | 76 | 3 | 8 | 7 | 1.6 |
| | 비중 | 28.1 | 26.4 | 13.4 | 9.0 | 11.9 | 9.0 | 0.3 | 0.9 | 0.8 | 0.2 |
| | 전년 대비 | 6.6 | 6.0 | -1.8 | -11.7 | 14.2 | -5.9 | 183.5 | 13.5 | 6.5 | -16.6 |
| | 품목 | 석유 조제품 | 전자 집적회로 | 석유 조제품 | 석유 조제품 | 전자 집적회로 | 석유 조제품 | 순항선 유람선 | 불도저 그레이더 | 기타의 편물 | 승용 자동차 |
| 수입 | 금액 | 113 | 80 | 123 | 111 | 33 | 53 | 13 | 6 | 1.9 | 0.2 |
| | 비중 | 21.2 | 15.0 | 23.0 | 20.8 | 6.2 | 10.0 | 2.4 | 1.1 | 0.4 | 0.03 |
| | 전년 대비 | 9.0 | 11.4 | -7.0 | 0.02 | -10.1 | 2.2 | -33.2 | 18.9 | 42.3 | 44.5 |
| | 품목 | 전자 집적회로 | 남자용 코트류 (비편물제) | 석유가스 | 석유가스 | 전자 집적회로 | 전자 집적회로 | 석유가스 | 남자용 코트류 (비편물제) | 티셔츠 | 칼럼비료 |

※ ASEAN 국가는 무역액(수출과 수입의 합산 금액)이 큰 순서대로 정렬

출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TREND ANALYSIS (2015)

또 증산층 확대에 따른 구매력 제고, 경제 성장에 따른 인프라 수요 증대, 다양한 자원들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고 교통 및 물류망 연계로 역내 시너지 확대가 예상되며 한-아세안FTA 상품 양허 안 약속에 따라 2016년 관세 인하가 본격 시작되어 향후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반면 아세안은 국가별 경제발전의 차이가 심하여 교역에서도 무역수지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3.2.2 관세양허 안

한-아세안FTA체결 특징 중 하나는 국가별 상이한 발전구조 및 경제수준, 국민소득 등에서 격차가 크므로 한국, 중국, 일본등과 아세안+1 FTA를 추진하면서 관세양허, 일정 및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차등을 허용하였다.

한-아세안 FTA 상품양허 협상은 중-아세안 FTA 상품협정을 기본 모델로 삼아 관세인하 및 철폐에 관한 상품자유화방식(Modality)을 정한 후 각 당사국이 자국 품목을 일반품목군 또는 민감품목군에 자율적으로 배치하되, 자국의 관심품목을 상대국의 양허 안에 반영토록 협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기존의 FTA체결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표 3-4> 민감품목군 (SL+HSL)에 대한 관세 감축 상한선

| 국가 | 민감품목군 상한선 | 초민감품목군 상한선 |
|--------------------|--------------------------------|--|
| 한국 아세안6 | 모든 관세품목의 10% 그리고 총 수입액의 10% | HS6단위 200개 혹은 당사국이 선택한 HS단위의 모든 관세품목 수의 3%, 그리고 총수입액의 3% |
| 베트남 | 모든 관세품목의 10% 그리고 총 수입액의 25% | HS6단위 200개 혹은 당사국이 선택한 HS단위의 모든 관세품목 수의 3% |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 모든 관세품목의 10% | HS6단위 200개 혹은 당사국이 선택한 HS단위의 모든 관세품목 수의 3%, |

출처: 산업통산자원부 보도자료 <http://www.moti.go.kr>

<표 3-5> 한국과 아세안(ASEAN)국별 민감품목군 양허 현황

| 국가별 | 민감품목군 | | 초민감품목군 | | 양허제외 (품목수) |
|-------|-------|--------|--------|-------|---------------|
| | 품목수 | 수입액 | 품목수 | 수입액 | |
| 한국 | 482개 | 8.45% | 200개 | 2.81% | 40개 |
| 말레이시아 | 462개 | 9.69% | 113개 | 2.99% | 39개 |
| 인도네시아 | 464개 | 9.57% | 156개 | 2.93% | 40개 |
| 필리핀 | 350개 | 9.97% | 93개 | 3.00% | 40개 |
| 싱가포르 | 0개 | 0% | 0개 | 0% | 0개 |
| 브루나이 | 40개 | 9.99% | 13개 | 2.99% | 13개 |
| 베트남 | 517개 | 23.12% | 200개 | - | 40개 |
| 캄보디아 | 465개 | - | 200개 | - | 40개 |
| 라오스 | 526개 | - | 200개 | - | 0개 |
| 미얀마 | 393개 | - | 200개 | - | 40개 |

출처: 대외경제정책 연구원(2007) 한-ASEAN FTA 주요내용 P.52

반면, 한-아세안FTA체결은 발효 후 활용률이 높지 않아 현재까지도 수출활용률은 다른 FTA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한-아세안FTA는 아직 상품의 관세 인하가 완료되지 않았고 베트남 등 후발개도국들의 경우 몇 년 전부터 관세 인하가 본격적으로 인하되기 시작하였으므로 향후 관세양허가 진행됨에 따라 對 아세안 수출 확대 및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 철강제품, 자동차 등 초민감 품목 또는 양허제외에 포함된 우리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추가 개방이 요구되며, 베트남 등 일부 국가들이 일방적인 MFN관세 인하로 한국 제품에 대한 FTA협정세율이 MFN 보다 높은 품목들이 있는 바, 동 품목들에 대한 추가개방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제3절 한-베트남FTA

3.3.1 추진배경 및 체결의의

한-베트남 FTA는 우리기업의 수출증가 효과와 베트남의 투자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로 상호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이다. 중국에 이어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이 제2의 글로벌 생산기지로 자리를 굳히며 우리 기업의 제조업 현지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부품, 소재 등의 중간재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여 對베트남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베트남은 해외 투자 유치 확대 및 對세계 수출 증가의 효과가 기대된다.

베트남의 부품 소재 산업은 여전히 취약하므로 국내 자체 조달이 용이하지 않아 한국의 현지 진출 기업뿐 아니라 일본, 미국 등 베트남 진출 기업의 중간재 해외소싱(sourcing)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표3-6> 한-베트남 수출입동향

(단위 : 백만불, 천톤, %)

| | | '05년 | '12년 | '13년 | '14년 | | '15년 4월누계 | |
|------|----|-------|--------|--------|-------------|---------------|-----------|--------|
| | | | | | 전년대비 증감률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 |
| 수출 | 금액 | 3,432 | 15,946 | 21,088 | 22,352 | 6.0 | 9,042 | 22.6 |
| | 중량 | 2,330 | 5,003 | 5,019 | 5,231 | 4.2 | 1,847 | 18.6 |
| 수입 | 금액 | 694 | 5,719 | 7,175 | 7,990 | 11.4 | 2,764 | 16.8 |
| | 중량 | 1,288 | 5,715 | 6,102 | 6,213 | 1.8 | 1,664 | -6.2 |
| 무역수지 | | 2,738 | 10,227 | 13,912 | 14,361 | 흑자폭 확대 | 6,279 | 흑자폭 확대 |

출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TREND ANALYSIS (2015)

한-베트남FTA는 한-아세안FTA 상품 양허를 기준으로 추가 자유화를 통해 기존 한-아세안 FTA의 양허 수준을 높이고 원산지기준 개선을 통해 동아시아경제권 형성에 있어 허브역할을 그리고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을 확대하여, 협상 재개 및 연구 중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의 FTA체결 정책방향과 역내 지역주의 발전추이를 감안하여 동아시아 지역주의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3.3.2 관세양허 안

한-베트남FTA는 양국 간에 기 발효 중인 한-아세안FTA를 토대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한-베트남FTA는 한-아세안FTA상 관세철폐 대상이 아닌 민감·초민감품목(관세감축, TRQ 또는 양허제외 품목)을 대상으로 협상을 추진하여 추가자유화를 달성하였다. 협상 대상품목으로 한국은1,063개 품목(4.7억불) 베트남은 1,226개(21.2억불)품목이다.

한-베트남FTA상품 양허는 수입액 기준 한국 91.7%→ 94.7%(+3%p), 베트남 86.3%→92.4%(+6.1%p), 품목수 기준 한국 95.4% 베트남 89.9%를 추가 자유화 하였다. 양측이 추가 자유화하기로 합의 한 품목은 협정 발효 후 15년 이내 관세철폐를 이행한다.

한국은 추가 자유화 품목(TRQ를 제외한 499개 품목) 중 천연꿀, 팥, 고구마 전분 등 3개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10년 내 철폐하며 베트남은 추가 자유화 품목(272개)중 자동차 부품3개를 제외하고 모두 10년 내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제4장 자료 분석

제1절 아세안 지역 FTA PSR유형 및 엄격성 지수

4.1.1 PSR유형 분석

아세안 지역FTA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각 협정에서 정하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HS협약(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에 근거하여 5년마다(2002년, 2007년, 2012년)개정, 수정되는 HS-CODE를 감안하여, 한-싱가포르FTA, 한-아세안FTA, 한-베트남FTA HS-CODE6단위 총 15,410개(한-싱가포르(5,133), 한-아세안(5,072), 한-베트남(5,205))품목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아세안 지역FTA PSR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HS-CODE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CTH or RVC)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전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48.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 HS-CODE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 17.60% 그리고 한-아세안, 한-베트남FTA에서만 나타나는 완전생산기준(WO)이7.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싱가포르FTA PSR에서는 HS-CODE4단위 세번변경기준(CTH:Change of Tariff Hedaing)의 빈도가 52.6%로 가장 높고 이어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Change In Chapter)이 13.00%를 구성하고 있다. 또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특정 세번변경 제외(ECTC: Exception to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명시된 4단위(NCH: Note Change In Heading) 또는 6단위

(NCS: Note Change In Subheading), 역내부가가치기준(RVC: Regional Value Content) 등을 선택기준과 결합기준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품목별로 다양한 유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가 중계무역항임을 감안하고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소 엄격한 원산지기준이 채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 >아세안 지역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주요 유형

| 한-싱가포르FTA | 한-아세안FTA | 한-베트남FTA |
|---|---|---|
| CTH(52.6%) CC(13.0%) CTHor CTSH+RVC(8.1%) 선택기준, 결합기준 유형多 | CTH or RVC(76.7%) WO(9.8%) CC+TECH+RVC(5.3%) 공통기준 적용 (447개 품목 제외) | CTH or RVC(70.0%) WO(11.5%) CC or RVC(6.5%) CTSH or RVC(5.7%) CC+TECH+RVC(5.3%) |

출처: 연구자 작성

반면 한-아세안FTA와 한-베트남FTA는 품목별 원산지기준유형 분포에 있어 서로 유사한 성향을 보이고 비교적 단순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가지고 있다.

한-아세안FTA와 한-베트남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HS-CODE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CTH or RVC)이 전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각 76.70%와 70.00%를 차지한다.

한-아세안FTA 원산지 기준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이라는 측면에서 간결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가 전 품목에 대해 각각의 결정기준을 명시하는 Positive List방식이 아닌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품목은 HS-CODE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

가치기준(CTH or RVC40%) 중에 선택 적용을 인정하는 공통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1.2 Estevadeordal의 엄격성 지수

원산지기준의 엄격성 지수(Restrictiveness Index)는 Estevadeordal(2000)이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원산지기준에 대한 최초의 계량적인 분석이라 할 수 있다. Estevadeordal의 엄격성 지수 분석방법은 원산지기준의 엄격성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어 특정 지역에서 체결된 FTA의 특수성을 반영한 엄격성지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Estevadeordal의 엄격성 지수는 다른 여러 FTA원산지기준의 엄격성 지수를 측정하는데 이용되고 있어 원산지기준의 국가별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표 4-2 > Estevadeordal의 엄격성 지수 개요

| 지수 | 엄격성 지수 요건 |
|----|--|
| 1 | HS8~10단위 변경 |
| 2 | 지수1보다 엄격하되, HS6단위(CTSH) 변경요건 수준의 엄격 |
| 3 | 지수2보다 엄격하되, CTSH+역내부가가치(RVC)요건 수준의 엄격 |
| 4 | 지수3보다 엄격하되, HS4단위(CTH)요건 수준의 엄격, RVC<50% |
| 5 | 지수4보다 엄격하되, CTH+RVC요건 수준의 엄격, RVC>50% |
| 6 | 지수5보다 엄격하되, HS2단위(CC)변경 요건 수준의 엄격 |
| 7 | 지수6보다 엄격하되, CC+가공공정(SP)요건 수준의 엄격, WO, SP |

출처: Estevadeordal(2000)

Estevadeordal(2000)는 원산지기준의 엄격성을 카테고리별로 1~7의 지수를 부여하는데 지수가 높을수록 원산지 기준이 엄격하고 생산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산지기준으로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이 가장 일반적

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번변경기준이 가장 덜 엄격한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 부가가치요건, 가공공정기준 순으로 엄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역내부가가치 기준이 가공공정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과 결합될 경우, 원산지기준이 더 엄격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세번변경기준은 HS-CODE 2단위 변경이 가장 엄격하며, 다음으로 4단위, 6단위 순으로 엄격하다.

3개 FTA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의 유형에 카테고리별로 Estevadeordal의 엄격성 지수1~7을 부여하여 본 결과 엄격성 지수 7이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WO) 품목 비중이 한-아세안FTA 9.8%에서 한-베트남 FTA 11.50%로 증가하여 해당 품목군의 원산지기준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4-3>아세안 지역 FTA PSR 유형 및 엄격성 지수

| 원산지결정기준 유형 | 엄격성 지수 | 싱가포르 | 아세안 | 베트남 | 합계 |
|----------------|--------|--------|-------|--------|-------|
| WO | 7 | 0 | 497 | 600 | 1097 |
| | | 0.00% | 9.80% | 11.50% | 7.10% |
| WO or CC+RVC | | 0 | 0 | 1 | 1 |
| | | 0.00% | 0.00% | 0.00% | 0.00% |
| WO or RVC | | 0 | 0 | 1 | 1 |
| | | 0.00% | 0.00% | 0.00% | 0.00% |
| CC+ECTC+TECH | | 58 | 0 | 0 | 58 |
| | | 1.10% | 0.00% | 0.00% | 0.40% |
| CC+TECH | | 211 | 0 | 0 | 211 |
| | | 4.10% | 0.00% | 0.00% | 1.40% |
| CC + RVC | | 67 | 2 | 3 | 72 |
| | | 1.30% | 0.00% | 0.10% | 0.40% |
| CC+TECH or RVC | | 0 | 268 | 211 | 479 |
| | | 0.00% | 5.30% | 4.10% | 3.10% |
| CTH+RM or RVC | 0 | 0 | 3 | 3 | |
| | 0.00% | 0.00% | 0.10% | 0.00% | |
| CTH+RM | 0 | 3 | 0 | 3 | |
| | 0.00% | 0.10% | 0.00% | 0.00% | |
| CC | 6 | 665 | 3 | 15 | 683 |
| | | 13.00% | 0.10% | 0.30% | 4.40% |
| CC+ECTC | | 211 | 0 | 10 | 221 |
| | | 4.10% | 0.00% | 0.20% | 1.40% |
| CC or CTH +RVC | | 5 | 0 | 0 | 5 |
| | | 0.10% | 0.00% | 0.00% | 0.00% |
| CC or RVC | 0 | 237 | 336 | 573 | |
| | 0.00% | 4.70% | 6.50% | 3.70% | |

| 원산지결정기준 유형 | 임격성 지수 | 싱가포르 | 아세안 | 베트남 | 합계 |
|-------------------------|--------|-----------------|-----------------|-----------------|------------------|
| CTH+RVC | 5 | 339 6.60% | 4 0.10% | 0 0.00% | 343 2.20% |
| CTH +ECTC or CTH+RVC | | 86 1.70% | 0 0.00% | 0 0.00% | 86 1.70% |
| RVC>50% | | 9 0.20% | 6 0.10% | 0 0.00% | 15 0.10% |
| CTH+ECTC | 4 | 160 3.10% | 2 0.00% | 2 0.00% | 164 1.10% |
| CTH+ECTC or NCS | | 1 0.00% | 0 0.00% | 0 0.00% | 1 0.00% |
| CTH+ECTC or RVC | | 0 0.00% | 0 0.00% | 22 0.40% | 22 0.10% |
| CTH | | 2699 52.60% | 10 0.20% | 7 0.10% | 2716 17.60% |
| CTH or CTSH+RVC | | 412 8.10% | 0 0.00% | 0 0.00% | 412 2.60% |
| CTH or NCS+RVC | | 9 0.20% | 0 0.00% | 0 0.00% | 9 0.10% |
| CTH or NCS | | 40 0.80% | 0 0.00% | 0 0.00% | 40 0.30% |
| CTH or RVC | | 1 0.00% | 3891 76.70% | 3644 70.00% | 7536 48.90% |
| CTH or TECH or RVC | | 0 0.00% | 21 0.40% | 21 0.40% | 42 0.30% |
| RVC<=50% | | 21 0.40% | 56 1.10% | 22 0.40% | 99 0.60% |
| CTSH+RVC | | 3 | 21 0.40% | 0 0.00% | 0 0.00% |
| CTSH+ECTC or RVC | 2 | 0 0.00% | 0 0.00% | 3 0.10% | 3 0.00% |
| CTSH | | 113 2.20% | 0 0.00% | 6 0.10% | 119 0.80% |
| CTSH or RVC | | 5 0.10% | 72 1.40% | 298 5.70% | 375 2.40% |
| 전 체 | | 5133 100.00% | 5072 100.00% | 5205 100.00% | 15410 100.00% |

출처: 연구자 작성

임격성 지수 4에 적용되는 HS-COD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
준(CTH or RVC)이 전체 품목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6.70%에서 70.00%로

낮아져 한-아세안FTA대비 한-베트남FTA에서 해당 품목군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성 지수 2에 적용되는 HS-CODE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CTSH or RVC) 품목 비중이1.40%에서 5.70%로 증가하여 해당 품목군의 원산지기준이 역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아세안 지역 FTA PSR 엄격성 지수 분석

4.2.1 FTA별 엄격성 지수 평균 비교

각 FTA별 협정에서 정하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의 유형을 분석하여 Estevadeordal의 엄격성지수를 카테고리별로 적용 후 3개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엄격성 지수 평균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SPSS 버전18 을 사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FTA별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엄격성 지수 평균은 한-싱가포르FTA 4.57, 한-아세안FTA 4.52, 한-베트남FTA 4.49의 값을 도출하였고 아세안 지역 전체 평균값은 4.53으로 나타났다. F값=6.32 P값=0.002로 유의수준 0.01에서 한-싱가포르FTA, 한-아세안FTA,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엄격성 지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아세안 지역 FTA 엄격성 지수 평균

| 구분 | N | 평균 | 표준편차 | F값 | 유의확률 |
|------|-------|------|-------|------|---------|
| 싱가포르 | 5133 | 4.57 | 1.062 | 6.32 | 0.002** |
| 아세안 | 5072 | 4.52 | 1.156 | | |
| 베트남 | 5205 | 4.49 | 1.299 | | |
| 합계 | 15410 | 4.53 | 1.177 | | |

*P<0.05, **P<0.01, ***P<0.001

아세안 지역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엄격성 지수는 한-EFTA(4.56)

와 비슷한 수준이다. 아세안 지역에서 가장 먼저 체결한 한-싱가포르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가장 엄격하고 이후 체결된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이 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엄격성 지수 평균의 사후비교 결과 2개 집단으로 구분되고 한-아세안FTA, 한-베트남FTA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엄격성 지수 평균은 유의수준 0.05에서 동질집단으로 볼 수 있다.

<표 4-5 > 엄격성 지수 평균 사후집단 비교

| FTA구분 | N |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집단 | |
|-------|------|---------------------|------|
| | | 1 | 2 |
| 베트남 | 5205 | 4.49 | |
| 아세안 | 5072 | 4.52 | |
| 싱가포르 | 5133 | | 4.57 |
| 유의확률 | | 0.223 | 1 |

자료: 연구자 작성

4.2.2 품목군별 엄격성 지수 평균 비교

HS-CODE 97류를 15개 품목군으로 분류하여 엄격성 지수 평균을 분석한 결과 1차산품이 6.65로 가장 높았고 의류직물 5.34, 가공식품 5.3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반기계, 전기기계는 3.78, 3.69로 낮다. F값 1342.179 P값 0.000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품목군별 엄격성 지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 품목군별 엄격성 지수 평균

| 품목군 | N | 평균 | 표준편차 | F값 | P값 |
|------|-------|------|-------|----------|----------|
| 1차산품 | 1,359 | 6.65 | 0.601 | 1342.179 | 0.000*** |
| 가공식품 | 992 | 5.32 | 1.224 | | |
| 광물 | 444 | 4.00 | 0.171 | | |
| 화학제품 | 3,001 | 4.03 | 0.267 | | |
| 건축제품 | 208 | 4.10 | 0.429 | | |
| 종이목재 | 715 | 4.00 | 0.000 | | |
| 의류직물 | 2,544 | 5.34 | 1.330 | | |

| | | | | | |
|--------|--------|------|-------|--|--|
| 비금속제품 | 430 | 4.15 | 0.526 | | |
| 금속제품 | 1,867 | 4.06 | 0.614 | | |
| 일반기계 | 1,545 | 3.78 | 0.766 | | |
| 전기기계 | 820 | 3.69 | 0.884 | | |
| 운송기기 | 298 | 4.19 | 0.397 | | |
| 기타운송기기 | 100 | 4.10 | 1.000 | | |
| 정밀기기 | 652 | 4.07 | 0.639 | | |
| 기타제조품 | 435 | 4.04 | 0.468 | | |
| 합계 | 15,410 | 4.53 | 1.177 | | |

*P<0.05, **P<0.01, ***P<0.001

품목군별 엄격성 지수 평균의 사후집단 분석 결과 6개 집단으로 구분되고 전기기계, 일반기계를 1집단으로 각 집단의 엄격성 지수 평균은 유의수준 0.05에서 동질집단으로 볼 수 있다. 사후집단 분석에서 집단 2,3,4에 중복하여 나타나는 기타제조품, 금속제품, 정밀기기, 가죽제품, 기타운송기기, 비금속제품은 각FTA별 해당 품목군의 엄격성 지수 평균은 동일하나 협정별로 품목별 원산지결정유형이 상이함에 따라 아래 표<4-7>과 같이 구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7> 품목군별 엄격성 지수 평균 사후집단 분석 비교

| 품목군 | N |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집단 | | | | | |
|--------|------|---------------------|-------|-------|-------|-------|------|
| | | 1 | 2 | 3 | 4 | 5 | 6 |
| 전기기계 | 820 | 3.69 | | | | | |
| 일반기계 | 1545 | 3.78 | | | | | |
| 종이목재 | 715 | | 4.00 | | | | |
| 광물 | 444 | | 4.00 | | | | |
| 화학제품 | 3001 | | 4.03 | | | | |
| 기타제조품 | 435 | | 4.04 | 4.04 | | | |
| 금속제품 | 1867 | | 4.06 | 4.06 | | | |
| 정밀기기 | 652 | | 4.07 | 4.07 | | | |
| 가죽제품 | 208 | | 4.10 | 4.10 | 4.10 | | |
| 기타운송기기 | 100 | | 4.10 | 4.10 | 4.10 | | |
| 비금속제품 | 430 | | | 4.15 | 4.15 | | |
| 운송기기 | 298 | | | | 4.19 | | |
| 가공식품 | 992 | | | | | 5.32 | |
| 의류직물 | 2544 | | | | | 5.34 | |
| 1차산품 | 1359 | | | | | | 6.65 |
| 유의확률 | | 0.07 | 0.106 | 0.072 | 0.086 | 0.577 | 1 |

4.2.3 21부 엄격성 지수 평균 비교

21부 기준 엄격성 지수 평균을 분석한 결과 1부(6.69):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1~5류), 2부(6.57): 식물성 생산품(6~14류), 11부(5.43):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50~63류), 3부(5.08): 동물성,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지방과 동물성, 식물성 납(15류)의 엄격성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4-8> 21부 엄격성 지수 평균

| 21부 | N | 평균 | 표준편차 | F값 | P값 |
|-----|-------|------|-------|----------|----------|
| 1부 | 792 | 6.69 | 0.503 | 1090.959 | 0.000*** |
| 2부 | 818 | 6.57 | 0.668 | | |
| 3부 | 138 | 5.08 | 1.404 | | |
| 4부 | 603 | 4.87 | 1.031 | | |
| 5부 | 444 | 4.00 | 0.171 | | |
| 6부 | 1672 | 4.00 | 0.224 | | |
| 7부 | 1329 | 4.07 | 0.310 | | |
| 8부 | 208 | 4.10 | 0.429 | | |
| 9부 | 280 | 4.00 | 0.000 | | |
| 10부 | 435 | 4.00 | 0.000 | | |
| 11부 | 2398 | 5.43 | 1.327 | | |
| 12부 | 146 | 4.00 | 0.000 | | |
| 13부 | 430 | 4.15 | 0.526 | | |
| 14부 | 159 | 4.03 | 1.528 | | |
| 15부 | 1708 | 4.07 | 0.442 | | |
| 16부 | 2365 | 3.75 | 0.810 | | |
| 17부 | 398 | 4.17 | 0.607 | | |
| 18부 | 652 | 4.07 | 0.639 | | |
| 19부 | 58 | 4.34 | 0.762 | | |
| 20부 | 356 | 3.99 | 0.397 | | |
| 21부 | 21 | 4.00 | 0.000 | | |
| 합계 | 15410 | 4.53 | 1.177 | | |

*P<0.05, **P<0.01, ***P<0.001

16부(3.75):기계류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 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부속품(84~85류) 20부(3.99):잡품(94~96류)의 엄격성 지수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F값 1090.959 P값 0.000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21부 엄격성 지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21부 엄격성 지수 평균 사후집단 비교

| 21부 | N | 유의수준=0.05에 대한 부집단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 16부 | 2365 | 3.75 | | | | | | |
| 20부 | 356 | | 3.99 | | | | | |
| 6부 | 1672 | | 4.00 | | | | | |
| 9부 | 280 | | 4.00 | | | | | |
| 10부 | 435 | | 4.00 | | | | | |
| 12부 | 146 | | 4.00 | | | | | |
| 21부 | 21 | | 4.00 | | | | | |
| 5부 | 444 | | 4.00 | | | | | |
| 14부 | 159 | | 4.03 | | | | | |
| 7부 | 1329 | | 4.07 | | | | | |
| 15부 | 1708 | | 4.07 | | | | | |
| 18부 | 652 | | 4.07 | | | | | |
| 8부 | 208 | | 4.10 | | | | | |
| 13부 | 430 | | 4.15 | | | | | |
| 17부 | 398 | | 4.17 | | | | | |
| 19부 | 58 | | | 4.34 | | | | |
| 4부 | 603 | | | | 4.87 | | | |
| 3부 | 138 | | | | | 5.08 | | |
| 11부 | 2398 | | | | | | 5.43 | |
| 2부 | 818 | | | | | | | 6.57 |
| 1부 | 792 | | | | | | | 6.69 |
| 유의확률 | | 1 | 0.069 | 1 | 1 | 1 | 1 | 0.114 |

21부별 엄격성 지수 평균의 사후집단 분석 결과 7개 집단으로 구분되고 16

부: 기계류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
과 음향의 기록기,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부속품(84~85류)을 1집단으로 각
집단의 엄격성 지수 평균은 유의수준 0.05에서 동질집단으로 볼 수 있다.



제3절 FTA별 PSR 엄격성 지수 평균 분석

4.3.1. 한-싱가포르FTA

한-싱가포르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엄격성 지수 전체 평균은 4.57로 1차산품(6.00) 가공식품(5.73) 의류직물(5.23) 순으로 엄격성지수가 높다.

아세안 지역 전체 품목별 엄격성 지수 평균과 동일하게 일반기계 및 전기기계의 엄격성 지수 평균은 각 3.99, 3.96으로 낮게 나타났다. F값=248.051 P값=0.000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엄격성 지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한-싱가포르FTA 품목군별 엄격성 지수 평균

| 품목군 | N | 평균 | 표준편차 | F값 | P값 |
|--------|------|------|-------|---------|----------|
| 1차산품 | 404 | 6.00 | 0.086 | 248.051 | 0.000*** |
| 가공식품 | 318 | 5.73 | 0.904 | | |
| 광물 | 148 | 4.00 | 0.000 | | |
| 화학제품 | 1003 | 4.11 | 0.371 | | |
| 가죽제품 | 70 | 4.26 | 0.674 | | |
| 종이목재 | 243 | 4.00 | 0.000 | | |
| 의류직물 | 851 | 5.23 | 1.376 | | |
| 비금속제품 | 144 | 4.40 | 0.805 | | |
| 금속제품 | 630 | 4.35 | 0.748 | | |
| 일반기계 | 532 | 3.99 | 0.771 | | |
| 전기기계 | 287 | 3.96 | 0.900 | | |
| 운송기기 | 98 | 4.59 | 0.494 | | |
| 기타운송기기 | 34 | 4.29 | 1.715 | | |
| 정밀기기 | 224 | 4.25 | 1.036 | | |
| 기타제조품 | 147 | 4.20 | 0.607 | | |
| 합계 | 5133 | 4.57 | 1.062 | | |

*P<0.05, **P<0.01, ***P<0.001

품목군별 엄격성 지수 평균의 사후집단 분석 결과 7개 집단으로 구분되고 각 집단의 엄격성 지수 평균은 유의수준 0.05에서 동질집단으로 볼 수 있다.

<표 4-11> 한-싱가포르FTA 품목군별 엄격성지수 평균 사후집단 분석

| 품목군 | N | 유의수준=0.05에 대한 부집단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 전기기계 | 287 | 3.96 | | | | | | |
| 일반기계 | 532 | 3.99 | | | | | | |
| 광물 | 148 | 4.00 | | | | | | |
| 종이목재 | 243 | 4.00 | | | | | | |
| 화학제품 | 1003 | 4.11 | 4.11 | | | | | |
| 기타제조품 | 147 | | 4.20 | 4.20 | | | | |
| 정밀기기 | 224 | | 4.25 | 4.25 | | | | |
| 가죽제품 | 70 | | 4.26 | 4.26 | | | | |
| 기타운송기기 | 34 | | 4.29 | 4.29 | | | | |
| 금속제품 | 630 | | | 4.35 | | | | |
| 비금속제품 | 144 | | | 4.40 | | | | |
| 운송기기 | 98 | | | | 4.59 | | | |
| 의류직물 | 851 | | | | | 5.23 | | |
| 가공식품 | 318 | | | | | | 5.73 | |
| 1차산품 | 404 | | | | | | | 6.00 |
| 유의확률 | | 0.162 | 0.074 | 0.063 | 1 | 1 | 1 | 1 |

한-싱가포르 FTA 21부 엄격성 지수 평균을 분석한 결과 3부(6.89): 동물성,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지방과 동물성, 식물성 납(15류), 2부(6.03) 식물성 생산품(6~14류), 1부(6.00):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1~5류), 14부(5.43): 천연진주, 양식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71류), 11부(5.31):방직용 섬유와 방직용섬유의 제품(50~63류), 4부(5.30):조제식료품, 음료, 주류, 식초,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16~24류), 19부(5.00): 무기, 총포

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93류)높게 나타났다.

16부(3.98): 기계류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 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부속품(84~85류)의 엄격성 지수 평균은 낮게 나타났다. F값=210.577 P값=0.000으로 유의수준0.001에서 한-싱가포르 FTA의 21부 원산지 결정기준 엄격성 지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한-싱가포르 FTA 21부 엄격성 지수평균

| 21부 | N | 평균 | 표준편차 | F값 | P값 |
|-----|------|------|-------|---------|----------|
| 1부 | 228 | 6.00 | 0.066 | 210.577 | 0.000*** |
| 2부 | 256 | 6.03 | 0.206 | | |
| 3부 | 45 | 6.89 | 0.438 | | |
| 4부 | 193 | 5.30 | 0.836 | | |
| 5부 | 148 | 4.00 | 0.000 | | |
| 6부 | 559 | 4.04 | 0.251 | | |
| 7부 | 444 | 4.19 | 0.467 | | |
| 8부 | 70 | 4.26 | 0.674 | | |
| 9부 | 93 | 4.00 | 0.000 | | |
| 10부 | 150 | 4.00 | 0.000 | | |
| 11부 | 801 | 5.31 | 1.382 | | |
| 12부 | 50 | 4.00 | 0.000 | | |
| 13부 | 144 | 4.40 | 0.805 | | |
| 14부 | 53 | 5.43 | 0.910 | | |
| 15부 | 577 | 4.25 | 0.646 | | |
| 16부 | 819 | 3.98 | 0.818 | | |
| 17부 | 132 | 4.52 | 0.969 | | |
| 18부 | 224 | 4.25 | 1.036 | | |
| 19부 | 20 | 5.00 | 1.026 | | |
| 20부 | 120 | 4.08 | 0.401 | | |
| 21부 | 7 | 4.00 | 0.000 | | |
| 합계 | 5133 | 4.57 | 1.062 | | |

*P<0.05, **P<0.01, ***P<0.001

한-싱가포르FTA 21부 엄격성 지수 평균의 사후집단 분석 결과 7개 집단으로 구분되고 각 집단의 엄격성 지수 평균은 유의수준 0.05에서 동질집단

으로 볼 수 있다.

<표 4-13>한-싱가포르FTA 21부 업격성 지수평균 사후집단 분석

| 21부 | N | 유의수준=0.05에 대한 부집단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 16부 | 819 | 3.98 | | | | | | |
| 5부 | 148 | 4.00 | | | | | | |
| 9부 | 93 | 4.00 | | | | | | |
| 10부 | 150 | 4.00 | | | | | | |
| 12부 | 50 | 4.00 | | | | | | |
| 21부 | 7 | 4.00 | | | | | | |
| 6부 | 559 | 4.04 | | | | | | |
| 20부 | 120 | 4.08 | | | | | | |
| 7부 | 444 | 4.19 | 4.19 | | | | | |
| 18부 | 224 | 4.25 | 4.25 | 4.25 | | | | |
| 15부 | 577 | 4.25 | 4.25 | 4.25 | | | | |
| 8부 | 70 | 4.26 | 4.26 | 4.26 | | | | |
| 13부 | 144 | | 4.40 | 4.40 | | | | |
| 17부 | 132 | | | 4.52 | | | | |
| 19부 | 20 | | | | 5.00 | | | |
| 4부 | 193 | | | | | 5.30 | | |
| 11부 | 801 | | | | | 5.31 | | |
| 14부 | 53 | | | | | 5.43 | | |
| 1부 | 228 | | | | | | 6.00 | |
| 2부 | 256 | | | | | | 6.03 | |
| 3부 | 45 | | | | | | | 6.89 |
| 유의확률 | | 0.112 | 0.19 | 0.091 | 1 | 0.361 | 0.872 | 1 |

4.3.2. 한-아세안FTA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업격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업격성 지수 전체 평균은 4.52로 1차 산품(6.93), 의류식품(5.43), 가공식품(5.10) 순으로 높았고 화학제품(3.99), 일반기계(3.97), 정밀기기(3.96), 금속제품(3.93)은 업격성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값=606.625 P값=0.000으로 한-아세안 FTA의 품목군별 원산지결정기준 업격성 지수 평균은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한-아세안FTA 품목군별 엄격성 지수 평균

| 품목군 | N | 평균 | 표준편차 | F값 | P값 |
|--------|------|------|-------|---------|----------|
| 1차산품 | 405 | 6.93 | 0.466 | 606.625 | 0.000*** |
| 가공식품 | 325 | 5.10 | 1.369 | | |
| 광물 | 148 | 4.00 | 0.000 | | |
| 화학제품 | 1000 | 3.99 | 0.200 | | |
| 가죽제품 | 69 | 4.03 | 0.241 | | |
| 종이목재 | 237 | 4.00 | 0.000 | | |
| 의류직물 | 850 | 5.43 | 1.330 | | |
| 비금속제품 | 144 | 4.04 | 0.287 | | |
| 금속제품 | 621 | 3.93 | 0.448 | | |
| 일반기계 | 506 | 3.97 | 0.234 | | |
| 전기기계 | 269 | 3.78 | 0.621 | | |
| 운송기기 | 103 | 4.00 | 0.000 | | |
| 기타운송기기 | 33 | 4.00 | 0.000 | | |
| 정밀기기 | 217 | 3.96 | 0.270 | | |
| 기타제조품 | 145 | 4.03 | 0.164 | | |
| 합계 | 5072 | 4.52 | 1.156 | | |

*P<0.05, **P<0.01, ***P<0.00

한-아세안FTA 품목별 엄격성 지수 평균의 사후비교 결과 5개 집단으로 구분되고 각 집단의 엄격성 지수 평균은 유의수준 0.05에서 동질집단으로 볼 수 있다.

<표 4-15> 한-아세안 FTA 품목군 엄격성 지수 평균 사후집단 분석

| 품목군 | N | 유의수준=0.05에 대한 부집단 | | | | |
|------|------|-------------------|------|---|---|---|
| | | 1 | 2 | 3 | 4 | 5 |
| 전기기계 | 269 | 3.78 | | | | |
| 금속제품 | 621 | 3.93 | 3.93 | | | |
| 정밀기기 | 217 | | 3.96 | | | |
| 일반기계 | 506 | | 3.97 | | | |
| 화학제품 | 1000 | | 3.99 | | | |

| | | | | | | |
|--------|-----|-------|-------|------|------|------|
| 광물 | 148 | | 4.00 | | | |
| 종이목재 | 237 | | 4.00 | | | |
| 운송기기 | 103 | | 4.00 | | | |
| 기타운송기기 | 33 | | 4.00 | | | |
| 기타제조품 | 145 | | 4.03 | | | |
| 가죽제품 | 69 | | 4.03 | | | |
| 비금속제품 | 144 | | 4.04 | | | |
| 가공식품 | 325 | | | 5.10 | | |
| 의류직물 | 850 | | | | 5.43 | |
| 1차산품 | 405 | | | | | 6.93 |
| 유의확률 | | 0.066 | 0.284 | 1 | 1 | 1 |

한-아세안 FTA 21부 엄격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1부(6.96):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1~5류), 2부(6.84):식물성 생산품(6~14류), 11부(5.52):방직용 섬유와 방직용섬유의 제품(50~63류)의 엄격성 지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14부(3.38):천연진주, 양식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71류), 16부(3.91):기계류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 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부속품(84~85류)엄격성 지수 평균은 낮게 나타났다.

F값=564.707 P값=0.000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한-아세안 FTA의 21부별 원산지결정기준 엄격성 지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16> 한-아세안 FTA 21부 엄격성 지수 평균

| 21부 | N | 평균 | 표준편차 | F값 | P값 |
|-----|------|------|-------|---------|----------|
| 1부 | 228 | 6.97 | 0.280 | | |
| 2부 | 258 | 6.84 | 0.573 | | |
| 3부 | 45 | 4.20 | 0.757 | | |
| 4부 | 199 | 4.61 | 1.126 | | |
| 5부 | 148 | 4.00 | 0.000 | | |
| 6부 | 557 | 3.98 | 0.207 | | |
| 7부 | 443 | 4.01 | 0.190 | | |
| 8부 | 69 | 4.03 | 0.241 | | |
| 9부 | 93 | 4.00 | 0.000 | | |
| 10부 | 144 | 4.00 | 0.000 | | |
| 11부 | 801 | 5.52 | 1.321 | 564.707 | 0.000*** |
| 12부 | 49 | 4.00 | 0.000 | | |
| 13부 | 144 | 4.04 | 0.287 | | |
| 14부 | 53 | 3.38 | 1.319 | | |
| 15부 | 568 | 3.99 | 0.167 | | |
| 16부 | 775 | 3.91 | 0.421 | | |
| 17부 | 136 | 4.00 | 0.000 | | |
| 18부 | 217 | 3.96 | 0.270 | | |
| 19부 | 20 | 4.00 | 0.000 | | |
| 20부 | 118 | 4.03 | 0.182 | | |
| 21부 | 7 | 4.00 | 0.000 | | |
| 합계 | 5072 | 4.52 | 1.156 | | |

*P<0.05, **P<0.01, ***P<0.001

한-아세안FTA 21부 엄격성 지수 평균의 사후비교 결과 6개 집단으로 구분되고 각 집단의 엄격성 지수 평균은 유의수준 0.05에서 동질집단으로 볼 수 있다.

<표 4-17> 한-아세안 FTA 21부 엄격성 지수평균 사후집단 분석 비교

| 21부 | N | 유의수준=0.05에 대한 부집단 | | | | | |
|------|-----|-------------------|------|------|------|------|------|
| | | 1 | 2 | 3 | 4 | 5 | 6 |
| 14부 | 53 | 3.38 | | | | | |
| 16부 | 775 | | 3.91 | | | | |
| 18부 | 217 | | 3.96 | 3.96 | | | |
| 6부 | 557 | | 3.98 | 3.98 | | | |
| 15부 | 568 | | 3.99 | 3.99 | | | |
| 5부 | 148 | | 4.00 | 4.00 | | | |
| 9부 | 93 | | 4.00 | 4.00 | | | |
| 10부 | 144 | | 4.00 | 4.00 | | | |
| 12부 | 49 | | 4.00 | 4.00 | | | |
| 17부 | 136 | | 4.00 | 4.00 | | | |
| 19부 | 20 | | 4.00 | 4.00 | | | |
| 21부 | 7 | | 4.00 | 4.00 | | | |
| 7부 | 443 | 4.01 | 4.01 | | | | |
| 8부 | 69 | 4.03 | 4.03 | | | | |
| 20부 | 118 | 4.03 | 4.03 | | | | |
| 13부 | 144 | 4.04 | 4.04 | | | | |
| 3부 | 45 | | 4.20 | | | | |
| 4부 | 199 | | | | 4.61 | | |
| 11부 | 801 | | | | | 5.52 | |
| 2부 | 258 | | | | | | 6.84 |
| 1부 | 228 | | | | | | 6.97 |
| 유의확률 | | 1.00 | 0.36 | 0.10 | 1.00 | 1.00 | 0.25 |

4.3.3. 한-베트남FTA

한-베트남 FTA 품목별 엄격성 지수 전체 평균은 4.57로 1차 산품(6.93) 의류직물(5.37),가공식품(5.14)순으로 엄격성 지수 평균이 높았고, 일반기계 (3.37), 정밀기기(3.30)엄격서 지수 평균이 낮게 나타났다. F값=728.062 P값 =0.000으로 유의수준0.001에서 한-베트남 FTA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엄

격성 지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한-베트남 FTA 품목군별 엄격성 지수 평균

| 품목군 | N | 평균 | 표준편차 | F값 | P값 |
|--------|------|------|-------|---------|----------|
| 1차산품 | 550 | 6.93 | 0.532 | 728.062 | 0.000*** |
| 가공식품 | 349 | 5.14 | 1.244 | | |
| 광물 | 148 | 4.01 | 0.297 | | |
| 화학제품 | 998 | 3.99 | 0.167 | | |
| 가죽제품 | 69 | 4.00 | 0.000 | | |
| 종이목재 | 235 | 4.00 | 0.000 | | |
| 의류직물 | 843 | 5.37 | 1.276 | | |
| 비금속제품 | 142 | 4.00 | 0.000 | | |
| 금속제품 | 616 | 3.90 | 0.490 | | |
| 일반기계 | 507 | 3.37 | 0.929 | | |
| 전기기계 | 264 | 3.30 | 0.957 | | |
| 운송기기 | 97 | 4.00 | 0.000 | | |
| 기타운송기기 | 33 | 4.00 | 0.000 | | |
| 정밀기기 | 211 | 4.00 | 0.000 | | |
| 기타제조품 | 143 | 3.89 | 0.461 | | |
| 합계 | 5205 | 4.49 | 1.299 | | |

*P<0.05, **P<0.01, ***P<0.001

한-베트남FTA 품목별 엄격성 지수 평균의 사후집단 분석 결과 5개 집단으로 구분되고 각 집단의 엄격성 지수 평균은 유의수준 0.05에서 동질집단으로 볼 수 있다.

<표 4-19> 한-베트남 FTA 품목군별 사후집단 비교

| 품목군 | N | 유의수준=0.05에 대한 부집단 | | | | |
|-------|-----|-------------------|------|---|---|---|
| | | 1 | 2 | 3 | 4 | 5 |
| 전기기계 | 264 | 3.30 | | | | |
| 일반기계 | 507 | 3.37 | | | | |
| 기타제조품 | 143 | | 3.89 | | | |
| 금속제품 | 616 | | 3.90 | | | |
| 화학제품 | 998 | | 3.99 | | | |

| | | | | | | |
|--------|-----|------|------|------|------|------|
| 가죽제품 | 69 | | 4.00 | | | |
| 종이목재 | 235 | | 4.00 | | | |
| 비금속제품 | 142 | | 4.00 | | | |
| 운송기기 | 97 | | 4.00 | | | |
| 기타운송기기 | 33 | | 4.00 | | | |
| 정밀기기 | 211 | | 4.00 | | | |
| 광물 | 148 | | 4.01 | | | |
| 가공식품 | 349 | | | 5.14 | | |
| 의류식품 | 843 | | | | 5.37 | |
| 1차산품 | 550 | | | | | 6.93 |
| 유의확률 | | 0.37 | 0.27 | 1.00 | 1.00 | 1.00 |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21부 엄격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1부(6.97):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1~5류), 2부(6.80): 식물성 생산품(6~14류), 11부(5.45):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섬유의제품(50~63류)의 엄격성 지수 평균이 높게 나타났고, 14부(3.28): 천연진주, 양식진주, 귀석,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71류), 16부(3.35): 기계류 전기기기과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 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부속품(84~85류) 엄격성 지수 평균은 낮게 나타났다.

F값=629.325 P값=0.000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한-베트남 FTA의 부별 원산지결정기준 엄격성 지수 평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베트남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21부 엄격성 지수 평균의 사후집단 분석 결과 6개 집단으로 구분되고 각 집단의 엄격성 지수 평균은 유의수준 0.05에서 동질집단으로 볼 수 있다.

<표 4-20> 한-베트남FTA 21부 업격성 지수 평균

| 21부 | N | 평균 | 표준편차 | F값 | P값 |
|-----|------|------|-------|---------|----------|
| 1부 | 336 | 6.97 | 0.293 | | |
| 2부 | 304 | 6.80 | 0.725 | | |
| 3부 | 48 | 4.21 | 0.617 | | |
| 4부 | 211 | 4.71 | 0.979 | | |
| 5부 | 148 | 4.01 | 0.297 | | |
| 6부 | 556 | 3.98 | 0.207 | | |
| 7부 | 442 | 4.00 | 0.095 | | |
| 8부 | 69 | 4.00 | 0.000 | | |
| 9부 | 94 | 4.00 | 0.000 | | |
| 10부 | 141 | 4.00 | 0.000 | | |
| 11부 | 796 | 5.45 | 1.268 | 629.325 | 0.000*** |
| 12부 | 47 | 4.00 | 0.000 | | |
| 13부 | 142 | 4.00 | 0.000 | | |
| 14부 | 53 | 3.28 | 1.231 | | |
| 15부 | 563 | 3.96 | 0.289 | | |
| 16부 | 771 | 3.35 | 0.939 | | |
| 17부 | 130 | 4.00 | 0.000 | | |
| 18부 | 211 | 4.00 | 0.000 | | |
| 19부 | 18 | 4.00 | 0.000 | | |
| 20부 | 118 | 3.86 | 0.505 | | |
| 21부 | 7 | 4.00 | 0.000 | | |
| 합계 | 5205 | 4.49 | 1.299 | | |

*P<0.05, **P<0.01, ***P<0.001

<표 4-21> 한-베트남 FTA 21부 사후집단 비교

| 21부 | N | 유의수준=0.05에 대한 부집단 | | | | | |
|-------|-----|-------------------|------|------|------|------|------|
| | | 1 | 2 | 3 | 4 | 5 | 6 |
| 14부 | 53 | 3.28 | | | | | |
| 16부 | 771 | 3.35 | | | | | |
| 20부 | 118 | | 3.86 | | | | |
| 15부 | 563 | | 3.96 | 3.96 | | | |
| 6부 | 556 | | 3.98 | 3.98 | | | |
| 7부 | 442 | | 4.00 | 4.00 | | | |
| 8부 | 69 | | 4.00 | 4.00 | | | |
| 9부 | 94 | | 4.00 | 4.00 | | | |
| 10부 | 141 | | 4.00 | 4.00 | | | |
| 12부 | 47 | | 4.00 | 4.00 | | | |
| 13부 | 142 | | 4.00 | 4.00 | | | |
| 17부 | 130 | | 4.00 | 4.00 | | | |
| 18부 | 211 | | 4.00 | 4.00 | | | |
| 19부 | 18 | | 4.00 | 4.00 | | | |
| 21부 | 7 | | 4.00 | 4.00 | | | |
| 5부 | 148 | | 4.01 | 4.01 | | | |
| 3부 | 48 | | | 4.21 | | | |
| 4부 | 211 | | | | 4.71 | | |
| 11부 | 796 | | | | | 5.45 | |
| 2부 | 304 | | | | | | 6.80 |
| 1부 | 336 | | | | | | 6.97 |
| 유의 확률 | | 0.62 | 0.38 | 0.11 | 1.00 | 1.00 | 0.17 |

FTA별 PSR 엄격성 지수는 아래 <표 4-22>의 분석 결과와 같이 1차산품, 가공식품, 의류직물 품목군에서 엄격성지수가 높게, 일반기계, 전기기계를 비롯 화학제품, 정밀기계의 엄격성 지수는 낮게 나타났다.

<표 4-22> FTA별 품목군별 엄격성 지수 비교

| 엄격성 지수 | 한-싱가포르FTA | 한-아세안FTA | 한-베트남FTA |
|--------|------------|------------|-------------|
| 5이상 | 1차산품(6.00) | 1차산품(6.93) | 1차산품(6.93) |
| | 가공식품(5.73) | 가공식품(5.10) | 가공식품(5.14) |
| | 의류직물(5.23) | 의류직물(5.43) | 의류직물(5.37) |
| 4미만 | 일반기계(3.99) | 일반기계(3.97) | 일반기계(3.37) |
| | 전기기계(3.96) | 전기기계(3.78) | 전기기계(3.30) |
| | | 화학제품(3.99) | 기타제조품(3.89) |
| | | 정밀기계(3.96) | |

출처: 저자 가공

HS-CODE 1~10류를 포함하는 1차산품의 경우 한-싱가포르FTA에서는 주로 HS-CODE2단위 세번변경(CC)을 적용하고 있고, 2단위 세번변경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명시하여 단순가공 또는 실질적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품목에 대해 원산지 인정을 제한한다. 한-아세안FTA, 한-베트남FTA에서는 1차산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완전생산기준(WO)만을 허용하여 동 품목군에 원산지 기준이 매우 엄격함을 알 수 있다.

가공식품군(11~24류) 역시 한-싱가포르FTA에서는 HS-CODE2단위 세번변경이 주로 적용되는 반면 한-아세안FTA, 한-베트남FTA에서는 HS-CODE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CTH or RVC)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다수 품목에 적용하고 있어 한-싱가포르 FTA보다 비교적 완화된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면, 양모, 인조합성섬유 등의 원단에서부터 직물, 이를 가공한 각종 의류가 분류되는 의류직물(50~60류)의 엄격성 지수는 아세안 지역 외의 협정에서도 대부분 높은 엄격성 지수를 가지는데 아세안 지역 FTA에서는 가공공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과 혼합 및 선택적으로 사용되어 엄격성이 높

게 나타났다.

일반기계(84류), 전기기계(85류)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은 주로 HS-CODE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과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CTH or RVC) 이 주로 사용되고 평균 엄격성 지수는 4미만으로 낮다.

화학제품(28~40류)의 경우 한-싱가포르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은 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지만 품목별 결정기준 유형(CC, CC+ECTC, CTH+RVC, CC or CTH+RVC, CTH+ECTC)이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고 한-아세안FTA와 한-베트남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은 4단위 세번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CTH or RVC)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이 되면 원산지로 인정한다. 화학제품은 HS-CODE6단위가 약 1000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 종류의 품목이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아세안 지역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엄격성 지수를 품목군 기준으로 정리하여 보면 우리나라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기존 연구(권미옥, 2015)에서의 결과와 동일하게 관세율이 높고 경쟁력이 취약하여 민감성을 가지는 산업의 엄격성 지수는 높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있는 일반기계, 전기기계, 화학제품, 정밀기기 품목군의 엄격성 지수는 낮게 나타났다.

<표 4-23> FTA별 21부 엄격성 지수 비교

| 엄격성 지수 | 한-싱가포르FTA | 한-아세안FTA | 한-베트남FTA |
|--------|--|---|---|
| 5이상 | 1~4부(1~24류) 11부(50~63류) 14부(71류)19부(93류) | 1~2부(1~14류) 11부(50~63류) | 1~2부(1~14류) 11부(50~63류) |
| 4미만 | 16부(84~85류) | 6부(28~38류) 14~16부(71~85류) 18부(90~92류) | 6부(28~38류) 14~16부(71~85류) 20부(94~96류) |

출처: 연구자 작성

FTA별 품목군별, 21부 원산지 결정기준의 엄격성 지수의 평균 사후집단 분석 결과 집단별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보는 동질집단 구분에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유형과 엄격성 지수의 다양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4절 가중평균 지수

4.4.1. 엄격성 지수의 가중평균

앞의 1,2,3절에서는 아세안 지역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유형에 따라 FTA별, 품목군별 그리고 21부의 엄격성 지수 평균을 도출하여 비교 분석해 보았다. 아세안 지역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엄격성 지수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인 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화학제품, 기타 제조품 품목군에서 엄격성이 낮게 1차산품, 가공식품, 의류직물에서는 엄격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무역수지가 흑자인 품목, 즉 수출 경쟁력이 강하고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설정하고, 적자일 경우 해당 품목의 원산지 규정을 상대적으로 엄격히 규정하는데 본 절에서는 한국의 對 아세안 지역 산업별 수출입 비중을 고려한 엄격성 지수의 가중평균을 통해 주요 교역 품목의 엄격성 정도가 어떠한지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의 對 아세안 지역 무역수지 현황과 엄격성 지수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앞에 제시한 단순평균 엄격성 지수의 경우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정해진 각 품목을 모두 포함하여 Estevadeordal의 엄격성 기준을 활용, 품목별 엄격성 지수를 결정한 이후 이를 모두 더하여 총 품목수로 나누면 단순평균 엄격성 지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수출 및 수입 비중을 고려한 가중평균의 엄격성 지수는 FTA체결별 수출 및 수입 비중을 산업별로 고려하여 아래의 식(1)과 같이 TE 전체 수출에서 산업 i 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당 산업의 원산지 기준 엄격성 지수를 곱하여 모든 산업을 더하면 가중 평균을 구할 수 있다.

$$Weighted R = \sum_{i=1}^N \frac{EX_i}{TE} Ri \quad \text{식(1)}$$

본 논문에서는 아세안 지역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 엄격성 지수의 가중 평균을 분석하고자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FTA체결국 간 수출입 금액을 추출하여 산업별 비중을 고려한 엄격성 지수의 가중평균을 계산하였다. 각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결정되었으나 실제 교역이 일어나지 않은 품목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교역이 발생한 전 품목을 고려한 단순평균 엄격성 지수와 산업별 수출입 비중(HS-CODE6단위)을 고려하여 계산한 각 FTA별 가중평균의 엄격성 지수는 아래 표<4-24>과 같다.

<표 4-24 > 가중평균한 엄격성 지수

| 구분 | 엄격성 지수 | | |
|-----------|--------|---------|---------|
| | 단순평균 | 수출 가중평균 | 수입 가중평균 |
| 한-싱가포르FTA | 4.57 | 3.76 | 4.04 |
| 한-아세안FTA | 4.52 | 3.81 | 3.30 |
| 한-베트남FTA | 4.49 | 3.86 | 4.70 |

출처: 연구자 작성

對베트남 산업별 수입비중을 고려한 엄격성 지수의 가중평균을 제외하고 수출 및 수입비중을 고려한 엄격성 지수가 단순평균 엄격성 지수 보다 낮다는 것은 한국의 對 아세안 교역에서 원산지 기준의 엄격성이 낮은 품목에 대해 무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농축수산업의 경우 원산지 기준의 엄격성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무역량은 상대적으로 제조업 보다 작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4.4.2. 한-싱가포르FTA업격성 지수의 가중평균

우리나라의 對싱가포르 산업별 수출입비중을 고려한 업격성 지수가 단순평균 업격성 지수 보다 낮은 원인으로 주요 교역품목의 업격성 지수가 보통 또는 낮은 일반(84류), 전기기계(85류), 기타 운송기기(88-89류), 광물(25-27류), 화학제품(23-40)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출입품목 금액은 총 수출금액의 91.9%, 총 수입금액의 99.9% 차지한다.

<표 4-25> 한-싱가포르FTA 수출비중 업격성 지수의 가중평균

기준: 對싱가포르 수출금액, 2014 단위: US, 천불

| 품목군 | 해당 류 | 수출금액 | 수출비중 | 가중평균 | 업격성 지수 |
|--------|--------|------------|--------|-------------|-------------|
| 1차산품 | 1-10류 | 18,286 | 0.1% | 0.00 | 6.00 |
| 가공식품 | 11-24류 | 76,336 | 0.3% | 0.02 | 5.73 |
| 광물 | 25-27류 | 8,329,293 | 35.1% | 1.40 | 4.00 |
| 화학제품 | 28-40류 | 697,977 | 2.9% | 0.12 | 4.11 |
| 가죽제품 | 41-43류 | 21,615 | 0.1% | 0.00 | 4.26 |
| 종이목재 | 44-49류 | 70,179 | 0.3% | 0.01 | 4.00 |
| 의류직물 | 50-67류 | 79,529 | 0.3% | 0.02 | 5.23 |
| 비금속제품 | 68-70류 | 31,094 | 0.1% | 0.01 | 4.40 |
| 금속제품 | 71-83류 | 604,052 | 2.5% | 0.11 | 4.35 |
| 일반기계 | 84류 | 1,079,765 | 4.5% | 0.18 | 3.99 |
| 전기기계 | 85류 | 5,098,612 | 21.5% | 0.85 | 3.96 |
| 운송기계 | 86-87류 | 147,115 | 0.6% | 0.03 | 4.59 |
| 기타운송기기 | 88-89류 | 5,363,679 | 22.6% | 0.97 | 4.29 |
| 정밀기기 | 90-92류 | 150,144 | 0.6% | 0.03 | 4.25 |
| 기타제조품 | 93-97류 | 54,520 | 0.2% | 0.01 | 4.20 |
| 총합계 | | 21,822,196 | 91.9% | 3.76 | 4.57 |
| 총수출금액 | | 23,749,882 | 100.0% | | |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엄격성 지수가 보통인 광물, 기타운송기기 품목군의 수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고, 엄격성 지수가 낮은 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기, 화학제품 품목군은 싱가포르와의 교역 특성상 수입액이 더 크고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수입액이 더 큰 이유로는 수출용 수입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품목군이 무역수지 적자로 나타났지만 엄격성 지수가 낮아 산업비중을 고려한 엄격성 지수의 가중평균이 단순평균 엄격성 지수보다 더 낮아지는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4-26>한-싱가포르FTA 수입비중 엄격성 지수의 가중평균

기준: 對싱가포르 수입금액, 2014 단위: US, 천불

| 품목군 | 해당 류 | 수입금액 | 수입비중 | 가중평균 | 엄격성 지수 |
|--------|--------|------------|--------|-------------|-------------|
| 1차산품 | 1-10류 | 2,307 | 0.0% | 0.00 | 6.00 |
| 가공식품 | 11-24류 | 102,010 | 0.9% | 0.05 | 5.73 |
| 광물 | 25-27류 | 1,917,972 | 17.0% | 0.68 | 4.00 |
| 화학제품 | 28-40류 | 1,475,093 | 13.1% | 0.54 | 4.11 |
| 가죽제품 | 41-43류 | 10,665 | 0.1% | 0.00 | 4.26 |
| 종이목재 | 44-49류 | 35,510 | 0.3% | 0.01 | 4.00 |
| 의류직물 | 50-67류 | 27,589 | 0.2% | 0.01 | 5.23 |
| 비금속제품 | 68-70류 | 24,392 | 0.2% | 0.01 | 4.40 |
| 금속제품 | 71-83류 | 350,260 | 3.1% | 0.13 | 4.35 |
| 일반기계 | 84류 | 1,542,508 | 13.6% | 0.54 | 3.99 |
| 전기기계 | 85류 | 5,218,449 | 46.2% | 1.83 | 3.96 |
| 운송기계 | 86-87류 | 7,081 | 0.1% | 0.00 | 4.59 |
| 기타운송기기 | 88-89류 | 62,436 | 0.6% | 0.02 | 4.29 |
| 정밀기기 | 90-92류 | 507,076 | 4.5% | 0.19 | 4.25 |
| 기타제조품 | 93-97류 | 13,339 | 0.1% | 0.00 | 4.20 |
| 총합계 | | 11,296,687 | 99.9% | 4.04 | 4.57 |
| 총수입금액 | | 11,303,182 | 100.0% | | |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4.4.3. 한-아세안FTA업격성 지수의 가중평균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산업별 수출입비중을 고려한 업격성 지수가 단순평균 업격성 지수 보다 낮은 원인으로 아세안 지역 내 교역 비중이 큰 싱가포르, 베트남(금속, 전기, 일반기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광물, 에너지, 천연자원)의 수출입 품목 비중이 차지하는 요인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27> 한-아세안FTA 수출비중 업격성 지수의 가중평균

기준: 對아세안 수출금액, 2014 단위: US, 천불

| 품목군 | 해당 류 | 수출실적 | 수출비중 | 가중평균 | 업격성 지수 |
|--------|--------|------------|--------|-------------|-------------|
| 1차산품 | 1-10류 | 346,916 | 0.4% | 0.03 | 6.93 |
| 가공식품 | 11-24류 | 789,385 | 0.9% | 0.05 | 5.10 |
| 광물 | 25-27류 | 13,831,321 | 16.4% | 0.65 | 4.00 |
| 화학제품 | 28-40류 | 9,178,270 | 10.9% | 0.43 | 3.99 |
| 가죽제품 | 41-43류 | 399,048 | 0.5% | 0.02 | 4.03 |
| 종이목재 | 44-49류 | 666,066 | 0.8% | 0.03 | 4.00 |
| 의류직물 | 50-67류 | 5,268,961 | 6.2% | 0.34 | 5.43 |
| 비금속제품 | 68-70류 | 202,717 | 0.2% | 0.01 | 4.04 |
| 금속제품 | 71-83류 | 10,047,163 | 11.9% | 0.47 | 3.93 |
| 일반기계 | 84류 | 6,709,972 | 7.9% | 0.32 | 3.97 |
| 전기기계 | 85류 | 20,866,186 | 24.7% | 0.93 | 3.78 |
| 운송기계 | 86-87류 | 2,746,047 | 3.2% | 0.13 | 4.00 |
| 기타운송기기 | 88-89류 | 5,975,014 | 7.1% | 0.28 | 4.00 |
| 정밀기기 | 90-92류 | 2,183,278 | 2.6% | 0.10 | 3.96 |
| 기타제조품 | 93-97류 | 389,933 | 0.5% | 0.02 | 4.03 |
| 총합계 | | 79,600,277 | 94.1% | 3.81 | 4.52 |
| 총수출금액 | | 84,577,327 | 100.0% | 0 | |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또 우리나라의 對 아세안 교역에서 업격성 지수가 높은 1차산품, 가공식품을 비롯하여 종이목재, 비금속제품, 기타제조품 품목군을 제외하고 모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 품목군의 업격성 지수는 전반적으로 4

미만의 낮은 엄격성 지수를 가진다. 따라서 한-아세안FTA 수출입 비중을 고려한 엄격성 지수의 가중평균이 단순 평균 엄격성 지수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28> 한-아세안FTA 수입비중 엄격성 지수의 가중평균

기준: 對아세안 수입금액, 2014 단위: US, 천불

| 품목군 | 해당 류 | 수입실적 | 수입비중 | 가중평균 | 엄격성 지수 |
|--------|--------|------------|--------|-------------|-------------|
| 1차산품 | 1-10류 | 838,240 | 1.6% | 0.11 | 6.93 |
| 가공식품 | 11-24류 | 1,424,159 | 2.7% | 0.14 | 5.10 |
| 광물 | 25-27류 | 7,455,251 | 14.0% | 0.56 | 4.00 |
| 화학제품 | 28-40류 | 5,085,812 | 9.5% | 0.38 | 3.99 |
| 가죽제품 | 41-43류 | 219,630 | 0.4% | 0.02 | 4.03 |
| 종이목재 | 44-49류 | 1,361,604 | 2.5% | 0.10 | 4.00 |
| 의류직물 | 50-67류 | 5,181,624 | 9.7% | 0.53 | 5.43 |
| 비금속제품 | 68-70류 | 301,106 | 0.6% | 0.02 | 4.04 |
| 금속제품 | 71-83류 | 2,974,183 | 5.6% | 0.22 | 3.93 |
| 일반기계 | 84류 | 2,873,470 | 5.4% | 0.21 | 3.97 |
| 전기기계 | 85류 | 12,331,837 | 23.1% | 0.87 | 3.78 |
| 운송기계 | 86-87류 | 131,820 | 0.2% | 0.01 | 4.00 |
| 기타운송기기 | 88-89류 | 111,129 | 0.2% | 0.01 | 4.00 |
| 정밀기기 | 90-92류 | 1,164,443 | 2.2% | 0.09 | 3.96 |
| 기타제조품 | 93-97류 | 524,697 | 1.0% | 0.04 | 4.03 |
| 총합계 | | 41,979,005 | 78.6% | 3.30 | 4.52 |
| 총수입금액 | | 53,417,787 | 100.0% | | |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4.4.4. 한-베트남FTA엄격성 지수의 가중평균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비중을 고려한 엄격성 지수가 단순평균 엄격성 지수 보다 낮은 원인으로 부품 소재 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으로 엄격성 지수가 낮은 중간재 (71~85류) 수출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對베트남 교역에서는 엄격성 지수가 높은 1차산품, 가공식품, 의류직물, 중

이 목재 품목군을 제외하고 모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동 품목군의 엄격성 지수는 전반적으로 4미만의 낮은 엄격성 지수를 가진다. 따라서 한-베트남FTA 수출 비중을 고려한 엄격성 지수의 가중평균이 단순 평균 엄격성 지수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29> 한-베트남FTA 수출비중 엄격성 지수의 가중평균

기준: 對베트남 수출금액, 2014 단위: US, 천불

| 품목군 | 해당 류 | 수출실적 | 수출비중 | 가중평균 | 엄격성 지수 |
|--------|--------|------------|---------|-------------|-------------|
| 1차산품 | 1-10류 | 178,997 | 0.80% | 0.06 | 6.93 |
| 가공식품 | 11-24류 | 192,993 | 0.86% | 0.04 | 5.14 |
| 광물 | 25-27류 | 644,138 | 2.88% | 0.12 | 4.01 |
| 화학제품 | 28-40류 | 2,903,040 | 12.99% | 0.52 | 3.99 |
| 가죽제품 | 41-43류 | 218,364 | 0.98% | 0.04 | 4.00 |
| 종이목재 | 44-49류 | 193,041 | 0.86% | 0.03 | 4.00 |
| 의류직물 | 50-67류 | 2,816,218 | 12.60% | 0.68 | 5.37 |
| 비금속제품 | 68-70류 | 53,925 | 0.24% | 0.01 | 4.00 |
| 금속제품 | 71-83류 | 2,785,883 | 12.46% | 0.49 | 3.90 |
| 일반기계 | 84류 | 2,091,691 | 9.36% | 0.32 | 3.37 |
| 전기기계 | 85류 | 8,497,546 | 38.02% | 1.25 | 3.30 |
| 운송기계 | 86-87류 | 995,575 | 4.45% | 0.18 | 4.00 |
| 기타운송기기 | 88-89류 | 24,084 | 0.11% | 0.00 | 4.00 |
| 정밀기기 | 90-92류 | 586,696 | 2.62% | 0.10 | 4.00 |
| 기타제조품 | 93-97류 | 167,075 | 0.75% | 0.03 | 3.89 |
| 총합계 | | 22,349,266 | 99.999% | 3.86 | 4.49 |
| 총수출금액 | | 22,351,690 | 100% | | |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반면, 對베트남 수입비중을 고려한 엄격성 지수가 단순평균 엄격성 지수 보다 높은 원인으로서는 對베트남 수입에서 엄격성 지수가 높은 의류직물 품목군과 수입이 크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주요 수입 품목인 의류직물 품목의 경우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진출하여 생산 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4-30> 한-베트남FTA 수입비중 엄격성 지수의 가중평균

기준: 對베트남 수출금액, 2014 단위: US, 천불

| 품목군 | 해당 류 | 수입실적 | 수입비중 | 가중평균 | 엄격성 지수 |
|--------|--------|-----------|---------|-------------|-------------|
| 1차산품 | 1-10류 | 715,050 | 8.9% | 0.62 | 6.93 |
| 가공식품 | 11-24류 | 329,944 | 4.1% | 0.21 | 5.14 |
| 광물 | 25-27류 | 347,768 | 4.4% | 0.17 | 4.01 |
| 화학제품 | 28-40류 | 311,372 | 3.9% | 0.16 | 3.99 |
| 가죽제품 | 41-43류 | 125,397 | 1.6% | 0.06 | 4.00 |
| 종이목재 | 44-49류 | 365,803 | 4.6% | 0.18 | 4.00 |
| 의류직물 | 50-67류 | 3,197,739 | 40.0% | 2.15 | 5.37 |
| 비금속제품 | 68-70류 | 57,717 | 0.7% | 0.03 | 4.00 |
| 금속제품 | 71-83류 | 397,035 | 5.0% | 0.19 | 3.90 |
| 일반기계 | 84류 | 229,641 | 2.9% | 0.10 | 3.37 |
| 전기기계 | 85류 | 1,410,046 | 17.6% | 0.58 | 3.30 |
| 운송기계 | 86-87류 | 44,375 | 0.6% | 0.02 | 4.00 |
| 기타운송기기 | 88-89류 | 5,248 | 0.1% | 0.00 | 4.00 |
| 정밀기기 | 90-92류 | 186,615 | 2.3% | 0.09 | 4.00 |
| 기타제조품 | 93-97류 | 266,519 | 3.3% | 0.13 | 3.89 |
| 총합계 | | 7,990,269 | 99.999% | 4.70 | 4.49 |
| 총수입금액 | | 7,990,325 | 100% | | |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제5절 FTA별 수출100대 품목 엄격성 지수

본 절에서는 2014년 기준 우리나라와 FTA별 수출입 실적을 바탕으로 HS-CODE6단위기준 100대 품목을 선정하여, 해당 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의 엄격성을 분석해 보았다. 아래 표<4-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대 수출 품목만을 고려한 엄격성 지수가 전 품목을 고려한 엄격성 지수보다 하락하는 이유로 아세안 지역으로 엄격성 지수가 높은 농축산물의 수출 실적이 미미하고 실제 엄격성이 낮은 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화학제품 품목군에서 주로 교역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FTA별 수출100대 품목 엄격성 지수

| 구분 | 수출 100대 품목 엄격성 지수 | | |
|-----------|-------------------|-----------------|-----------------|
| | 전체평균 | 100대 품목 단순평균 | 100대 품목 가중평균 |
| 한-싱가포르FTA | 4.57 | 4.02 | 3.83 |
| 한-아세안FTA | 4.52 | 4.06 | 2.63 |
| 한-베트남FTA | 4.49 | 3.93 | 2.81 |

출처: 연구자 작성

우리나라의 對싱가포르 수출 100대 품목을 대상으로 엄격성 지수를 계산한 결과,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 엄격성 지수 4.57보다 낮은 4.02로 나타났다. 수출금액 비중을 고려한 100대 품목의 엄격성 지수 가중평균을 구한 결과 3.83으로 100대 품목의 단순평균 엄격성 지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수출금액 2위를 차지하는 선박(89류)의 높은 엄격성 지수를 제외하고 그 외 수출금액 비중이 큰 품목들은 모두 엄격성 지수 4미만으로 100대 품목의 가중 평균한 엄격성 지수가 단순평균 엄격성 지수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표 4-32> 한-싱가포르FTA 수출 100대 품목 엄격성 지수

기준: 2014년, 對싱가포르 수출금액, US천불

| 류 | 품목군 | HS코드 수 | 수출금액 | 총 수출액 대비 비중 | 가중평균 엄격성 지수 | 평균 엄격성 지수 |
|-----------|-------------------|--------|------------|-------------|-------------|-----------|
| 27 | 광물성 연료. 에너지 | 3 | 10,437,339 | 43.9% | 1.46 | 3.33 |
| 89 | 선박 | 5 | 5,354,254 | 22.5% | 1.35 | 6.00 |
| 85 | 전기기기.TV.VTR | 20 | 4,866,926 | 20.5% | 0.72 | 3.50 |
| 84 | 보일러. 기계류 | 19 | 695,964 | 2.9% | 0.10 | 3.47 |
| 29 | 유기화합물 | 6 | 142,532 | 0.6% | 0.02 | 4.00 |
| 39 | 플라스틱과 그제품 | 6 | 131,499 | 0.6% | 0.03 | 4.67 |
| 73 | 철강제품 | 8 | 128,808 | 0.5% | 0.02 | 4.00 |
| 87 | 일반차량 | 3 | 124,787 | 0.5% | 0.03 | 5.00 |
| 72 | 철강 | 5 | 121,845 | 0.5% | 0.02 | 4.00 |
| 71 | 귀석.반귀석.귀금속 | 2 | 63,234 | 0.3% | 0.02 | 6.00 |
| 38 |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2 | 58,878 | 0.2% | 0.01 | 4.50 |
| 90 | 광학. 의료. 측정검사 정밀기기 | 4 | 50,517 | 0.2% | 0.01 | 3.50 |
| 33 | 향료. 화장품 | 1 | 34,061 | 0.1% | 0.01 | 4.00 |
| 48 | 지와 판지 | 2 | 32,690 | 0.1% | 0.01 | 4.00 |
| 28 | 무기화합물 | 2 | 23,136 | 0.1% | 0.00 | 4.00 |
| 94 | 가구류.조명기구 | 1 | 20,228 | 0.1% | 0.00 | 4.00 |
| 49 | 서적. 신문. 인쇄물 | 1 | 19,983 | 0.1% | 0.00 | 4.00 |
| 24 | 담배 | 1 | 17,210 | 0.1% | 0.00 | 4.00 |
| 25 | 토석류.소금 | 1 | 15,114 | 0.1% | 0.00 | 4.00 |
| 76 | 알루미늄과 그제품 | 1 | 13,558 | 0.1% | 0.00 | 4.00 |
| 21 | 기타의 조제 식료품 | 1 | 11,629 | 0.0% | 0.00 | 5.00 |
| 56 | 워딩. 부직포 | 1 | 11,542 | 0.0% | 0.00 | 4.00 |
| 8 | 관실. 견과류 | 1 | 11,076 | 0.0% | 0.00 | 6.00 |
| 74 | 동과 그제품 | 1 | 10,602 | 0.0% | 0.00 | 5.00 |
| 70 | 유리 | 1 | 10,146 | 0.0% | 0.00 | 4.00 |
| 37 | 필름. 인화지. 사진용 재료 | 1 | 9,655 | 0.0% | 0.00 | 4.00 |
| 83 | 각종 비금속 제품 | 1 | 9,538 | 0.0% | 0.00 | 4.00 |
| 100대품목 합계 | | 100 | 22,426,751 | 94.4% | 3.80 | 4.02 |
| 총수출금액 | | | 23,749,882 | 100.0% | | |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수출 100대 품목을 대상으로 엄격성 지수를 계산한 결과,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 엄격성 지수 4.52보다 낮은 4.06으로 나타났다. 100대 품목 엄격성 지수의 가중평균을 구한 결과 2.63으로 100대 품목의 단순평균 엄격성 지수와 큰 차이를 보였다. 아세안 지역 내 수출입 교역 1,2위를 차지하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엄격성 지수가 낮은 주요 교역 품목 실적이 반영되어 수출 100대 품목의 가중평균한 엄격성 지수가 단순평균 엄격성 지수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한-아세안FTA 수출 100대 품목 엄격성 지수

기준: 2014년, 對아세안 수출금액, US천불

| 류 | 품목군 | HS코드 수 | 수출금액 | 총 수출액 대비 비중 | 가중평균 엄격성 지수 | 엄격성 지수 |
|----------------------|-------------------|--------|--------------------------|-----------------|-------------|-------------|
| 27 | 광물성 연료. 에너지 | 2 | 18,677,285 | 22.1% | 0.66 | 3.00 |
| 85 | 전기기기.TV.VTR | 19 | 17,938,389 | 21.2% | 0.78 | 3.68 |
| 89 | 선박 | 3 | 5,865,038 | 6.9% | 0.28 | 4.00 |
| 84 | 보일러. 기계류 | 12 | 2,993,442 | 3.5% | 0.14 | 3.83 |
| 72 | 철강 | 12 | 2,971,144 | 3.5% | 0.14 | 4.00 |
| 39 | 플라스틱과 그제품 | 12 | 2,297,148 | 2.7% | 0.11 | 4.00 |
| 87 | 일반차량 | 6 | 1,907,242 | 2.3% | 0.09 | 4.00 |
| 60 | 편물 | 4 | 1,580,582 | 1.9% | 0.07 | 4.00 |
| 90 | 광학. 의료. 측정검사 정밀기기 | 4 | 1,368,593 | 1.6% | 0.06 | 3.50 |
| 74 | 동과 그제품 | 2 | 808,051 | 1.0% | 0.04 | 4.00 |
| 40 | 고무와 그제품 | 3 | 736,643 | 0.9% | 0.03 | 4.00 |
| 73 | 철강제품 | 2 | 461,776 | 0.5% | 0.02 | 4.00 |
| 76 | 알루미늄과 그제품 | 1 | 461,239 | 0.5% | 0.02 | 4.00 |
| 62 | 의류(편물제 제외) | 2 | 454,308 | 0.5% | 0.04 | 7.00 |
| 54 | 인조 필라멘트 섬유 | 2 | 388,971 | 0.5% | 0.02 | 4.00 |
| 59 | 침투. 도포한 직물 | 1 | 273,890 | 0.3% | 0.02 | 6.00 |
| 79 | 아연과 그제품 | 1 | 272,487 | 0.3% | 0.01 | 4.00 |
| 78 | 연과 그제품 | 1 | 224,611 | 0.3% | 0.01 | 4.00 |
| 33 | 향료. 화장품 | 1 | 184,675 | 0.2% | 0.01 | 4.00 |
| 41 | 원피. 가죽 | 1 | 171,447 | 0.2% | 0.01 | 4.00 |
| 28 | 무기화합물 | 1 | 150,626 | 0.2% | 0.01 | 4.00 |
| 30 | 의료용품 | 1 | 148,112 | 0.2% | 0.01 | 4.00 |
| 5 | 기타 동물성 생산품 | 1 | 135,509 | 0.2% | 0.01 | 7.00 |
| 64 | 신발류 | 1 | 133,847 | 0.2% | 0.01 | 4.00 |
| 63 | 기타섬유제품. 냅마 | 1 | 131,614 | 0.2% | 0.01 | 7.00 |
| 71 | 귀석.반귀석.귀금속 | 1 | 130,939 | 0.2% | 0.01 | 4.00 |
| 58 | 특수질물 | 1 | 122,664 | 0.1% | 0.01 | 6.00 |
| 29 | 유기화합물 | 1 | 120,340 | 0.1% | 0.01 | 4.00 |
| 55 | 인조 스테이플 섬유 | 1 | 116,459 | 0.1% | 0.01 | 6.00 |
| 100대 품목 합계 총 수출금액 | | 100 | 61,227,071 84,577,327 | 72.4% 100.0% | 2.63 | 4.06 |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 100대 품목을 대상으로 엄격성 지수를 계산한 결과,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 엄격성 지수 4.49보다 낮은 3.93으로 나타났다. 수출금액 비중을 고려한 100대 품목의 엄격성 지수 가중평균을 구한 결과 2.81로 100대 품목의 단순평균 엄격성 지수와 큰 차이를 보였다.

한-베트남FTA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 유망품목인 자동차 부품(84, 87류), 생활가전을 포함한 전자기기 및 기계류(84, 85류)품목 원산지 결정기준의 엄격성이 한-아세안FTA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보다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기업의 베트남 현지 투자가 가속화 되는 지금 베트남의 부품 소재 산업이 취약한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품목군의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는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표 4-34> 한-베트남FTA 수출 100대 품목 엄격성 지수

기준: 2014년, 對베트남 수출금액, US천불

| 류 | 품목 | HS코드 수 | 수출금액 | 총 수출액 대비 비중 | 가중평균 엄격성 지수 | 베트남 엄격성지수 | 아세안 엄격성지수 |
|-----------|-------------------|--------|------------|-------------|-------------|-------------|-------------|
| 85 | 전기기기.TV.VTR | 21 | 7,778,393 | 34.8% | 1.16 | 3.33 | 3.62 |
| 39 | 플라스틱과 그제품 | 14 | 1,269,242 | 5.7% | 0.23 | 4.00 | 4.00 |
| 84 | 보일러. 기계류 | 9 | 947,090 | 4.2% | 0.14 | 3.33 | 3.78 |
| 87 | 일반차량 | 8 | 863,683 | 3.9% | 0.15 | 4.00 | 4.00 |
| 60 | 편물 | 5 | 798,889 | 3.6% | 0.14 | 4.00 | 4.00 |
| 72 | 철강 | 5 | 688,036 | 3.1% | 0.12 | 4.00 | 4.00 |
| 27 | 광물성 연료. 에너지 | 2 | 574,683 | 2.6% | 0.08 | 3.00 | 3.00 |
| 90 | 광학. 의료. 측정검사 정밀기기 | 4 | 382,404 | 1.7% | 0.07 | 4.00 | 3.50 |
| 54 | 인조 필라멘트 섬유 | 4 | 312,235 | 1.4% | 0.06 | 4.00 | 4.00 |
| 62 | 의류(편물제 제외) | 2 | 310,650 | 1.4% | 0.10 | 7.00 | 7.00 |
| 76 | 알루미늄과 그제품 | 2 | 308,349 | 1.4% | 0.06 | 4.00 | 4.00 |
| 73 | 철강제품 | 2 | 237,845 | 1.1% | 0.04 | 4.00 | 4.00 |
| 74 | 동과 그제품 | 2 | 222,055 | 1.0% | 0.04 | 4.00 | 4.00 |
| 59 | 침투. 도포한 직물 | 1 | 196,406 | 0.9% | 0.05 | 6.00 | 6.00 |
| 41 | 원피. 가죽 | 2 | 131,582 | 0.6% | 0.02 | 4.00 | 4.00 |
| 55 | 인조 스테이플 섬유 | 2 | 110,941 | 0.5% | 0.02 | 5.00 | 5.00 |
| 78 | 연과 그제품 | 2 | 100,675 | 0.5% | 0.02 | 4.00 | 4.00 |
| 40 | 고무와 그제품 | 2 | 97,571 | 0.4% | 0.02 | 4.00 | 4.00 |
| 30 | 의료용품 | 1 | 86,556 | 0.4% | 0.02 | 4.00 | 4.00 |
| 79 | 아연과 그제품 | 1 | 83,230 | 0.4% | 0.01 | 4.00 | 4.00 |
| 05 | 기타 동물성 생산품 | 1 | 83,216 | 0.4% | 0.03 | 7.00 | 7.00 |
| 64 | 신발류 | 1 | 67,437 | 0.3% | 0.01 | 4.00 | 4.00 |
| 24 | 담배 | 1 | 66,682 | 0.3% | 0.01 | 4.00 | 4.00 |
| 58 | 특수질물 | 1 | 59,997 | 0.3% | 0.02 | 6.00 | 6.00 |
| 48 | 지와 판지 | 1 | 48,297 | 0.2% | 0.01 | 4.00 | 4.00 |
| 83 | 각종 비금속 제품 | 1 | 46,877 | 0.2% | 0.01 | 4.00 | 4.00 |
| 32 | 염료.안료.페인트.잉크 | 1 | 44,177 | 0.2% | 0.01 | 4.00 | 4.00 |
| 96 | 잡품 | 1 | 39,438 | 0.2% | 0.01 | 4.00 | 4.00 |
| 38 |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 1 | 37,267 | 0.2% | 0.01 | 4.00 | 4.00 |
| 100대 품목합계 | | 100 | 15,993,903 | 71.6% | 2.81 | 3.93 | 4.01 |
| 총수출금액 | | | 22,351,690 | 100.0% | | | |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원산지규정은 FTA에 있어 관세양허와 더불어 핵심이 되는 부분이지만 서로 다른 특혜협정들로 갈수록 복잡하게 얽히는 원산지 규정과 통관제도로 인해 국가 간 교역이 복잡해지고 있다.

FTA협정문 상에서 특정 상품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기준하고 있더라도 복잡하고 엄격한 원산지기준으로 수출 품목이 원산지기준을 허용하지 못하거나 원산지 증명을 위한 절차와 비용이 특혜관세를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FTA 특혜관세를 포기하게 된다.

원산지규정의 엄격성이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된다면 역내 중간재 산업보호 효과, 더 나아가 연개국간 교역확대와 역내외국가로부터의 투자 확대 등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결정될 경우는 원산지규정 충족을 위한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오히려 생산, 교역 및 투자에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른 무역창출 감소 등 부정적인 효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FTA원산지기준의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기준의 엄격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아세안 지역에서 체결한 FTA의 원산지 규정 특징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엄격성 지수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아세안 지역FTA 전체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엄격성 지수 평균은 4.53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미FTA(4.45), 한-중FTA(4.43)보다는 높고, 한-EFTA(4.56)와 비슷한 수준의 엄격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의 엄격성 지수 평균은 한-싱가포르FTA(4.57), 한-아세안FTA(4.52), 한-베트남FTA(4.49)로 아세안 지역FTA원산지 결정기준의 엄격성 지수가 5이상으로 높은 품목군은 모두 동일하게 1차산품, 가공식품, 의류직물 품목군이고 엄격성 지수가 4미만인 품목군 역시 3개 FTA에서 유사하게 전기기계, 일반기계, 금속기계 품목군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유형은 HS-CODE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CTH or RVC)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비중이 48.90% 가장 높았고,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 17.6%, 한-아세안FTA, 한-베트남FTA에서만 나타나는 완전생산기준(WO)이 7.10%로 나타났다.

Estevadeordal의 엄격성 지수를 적용하여 본 결과 엄격성 지수7이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WO)품목 비중이 한-아세안FTA 9.8%에서 한-베트남 FTA 11.50%로 증가하여 1차산품의 원산지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엄격성 지수 4에 적용되는 HS-CODE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CTH or RVC) 품목 비중이 한-아세안 FTA 76.70%에서 한-베트남 FTA 70.00%로 낮아져 해당품목군의 엄격성이 완화되었고, 엄격성 지수 2에 적용되는 HS-CODE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CTSH or RVC)의 품목 비중이 한-아세안 FTA 1.40%에서 한-베트남 FTA 5.70%로 증가하여 기존의 HS-CODE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HS-CODE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변경하여 역내산 인정요건이 완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산업별로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흑자일 경우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설정하고, 적자일 경우 해당 품목의 원산지 기준을 상대적으로 엄격히 적용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FTA별 산업별 수출입 비중을 고려한 엄격성 지수의 가중평균 분석을 통해 한국의 對아세안 FTA별 무역수지가 증가하고 무역수지 증가 품목군의 엄격성 지수가 낮을수록 FTA별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가중평균한 엄격성 지수가 단순평균 엄격성 지수보다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FTA별 우리나라의 수출 100대 품목(2014년 수출금액 기준, HS-CODE6단위)을 대상으로 엄격성 지수를 계산한 결과, FTA별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 엄격성 지수 보다 모두 낮고 총 수출금액 대비 100대 수출품목 금액 비중을 고려한 100대 품목의 가중평균한 엄격성 지수 역시 100대 품목의 단순평균보다 낮게 나왔다.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지역 100대 수출 품목은 일반기계, 전기기계, 자동차 부품, 의류 직물 등의 원부자재 및 특정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원인으로 아세안이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각되면서 원부자재 수출 및 중간재 수입 후 재수출 비중이 확대요인과 농축수산물의 수출이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지역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엄격성 지수는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주요 수출 품목인 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화학제품에 대해 대부분 4미만으로 낮게 그리고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은 HS-CODE4단위 세번변경(CTH), 4단위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CTH or RVC)으로 단순한 결정유형을 적용하고 있다.

조립 가공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소재를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일본 등에서 대부분 수입하는 아세안의 주요 국가(싱가포르, 베트남)의 산업 특징과 對아세안 지역 주요 수출 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 및 엄격성 정도는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품목별 對 아세안 무역수지가 흑자 일수록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 지수는 낮아지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으므로 향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FTA를 협의 중인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간FTA 협상의 기본적인 원산지 규정의 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동일 품목이지만 지역 내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서로 달라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준비의 복잡성을 가중시키고 비용도 증가시키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일관성 있는 엄격성 지수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개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엄격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Estevadeordal의 지수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NAFTA에서 채택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하여 이를 범주화해서 지수를 부여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무역의존도가 높고 특정 품목에 대한 산업편중이 심한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특성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Estevadeordal의 엄격성 지수 결정 요인은 단순하여 원산지 규정의 미묘한 변화로 인한 엄격성 차이를 고려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지수를 적용하여 분석한 원산지결정요인은 우리 산업현실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일 수 있다.

FTA에서의 원산지규정이 갖는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가 아세안 지역에서 체결한 FTA 원산지 규정 역시 일관성이 결여되어 FTA이행에 있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 등을 재차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일관성 있는 엄격성 지수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개발,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 강문성(2015). 한중FTA 원산지 기준의 특징과 엄격성 지수에 대한 연구. **무역연구**, 11(3), 216-227.
- 김세영, 조국형(2012). FTA원산지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관세학회지**, 13(2), 69-91.
- 김영춘, 성남길, 김정숙(2012). FTA특혜관세 활용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13(4), 23-42.
- 김한성, 조미진, 정재완, 김민정(2008). **한국 특혜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 전략 연구보고서 08-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병섭, 조미진, 이병문(2014). 한국FTA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일관성 분석. **무역학회지**, 39(4), 60-85.
- 손수석(2012). 다자적 세계에서 FTA 원산지규정의 무역제한성 완화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13(4), 43-60.
- 정재완(2015). FTA품목별원산지기준(PSR)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조세연구**, 15(3), 7-38.
- 조정란(2006). 엄격성지수(RI)를 활용한 FTA원산지기준 분석. **국제지역연구**, 10(1), 201-221.
- 정재완, 손문정(2014). 관세특혜를 위한 PSR기준시 고려한 관세율에 대한 연구. **조세연구**, 14(3), 241-265.
- 조정란(2010). 한국과 일본의 FTA원산지기준 비교분석 및 한일FTA원산지기준 시사점 연구. **무역학회지**, 35(1), 253-272.
- 조미진, 김한성, 김민성, 양주영(2010). **동아시아 FTA를 대비한 한국 원산지 규정 추진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순태(2014). FTA 특혜원산지기준의 문제점과 조화. **관세학회지**, 13(2), 93-108.

이용근, 안창달(2011). 한국FTA원산지기준의 엄격성이 무역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36(5), 171-196.

최장우(2007). 한-FTA체결국간 원산지제도 비교 및 시사점에 대한 연구. **e-비즈니스 연구**, 8(4), 331-357.

2. 해외 문헌

Estevadeordal A.(2000), Negotiating Preferential Market Access: The Case of NAFTA, *Journal of World Trade*, 34, 141-200

Estevadeordal A.(2003), Rules of Origin in FTAs: A World Map, *PECC Trade Forum*, April 22-23, 6-7.

Krueger, A. O.(1993), Free Trade Agreements as Projectionist Devices: Rules of Origin,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54, No.(1), pp. 169-187.

3. 기타자료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싱가포르 FTA협정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한-아세안 FTA협정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한-베트남 FTA협정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